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2008. 6

**금 융 위 원 회**  
**금융정보분석원**



## 발 간 사



금년 11월이면 우리나라에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이제 국제기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거의 완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등에서 혐의거래보고 제도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고객확인제도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우리 금융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라는 국제적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테러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법률, 즉 「공중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카지노 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적용토록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카지노 사업자는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자금세탁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자금세탁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정도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 정교화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룩한 또다른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IT 기술을 자금세탁방지업무에 적용한 「FIU 종합정보시스템」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혐의거래보고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한 심사분석 추가 수요를 인력증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보화 기술과 업무능률 향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기초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심사분석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IU 종합정보시스템」은 민간분야에서도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e-비즈니스 우수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1년 11월 28일을 기념하여, 이 날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매년 11월 28일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전세계 FIU 총회인 「에그몽 그룹」 제16차 총회를 서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개최사를 하는 등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지역 최초로 이 총회를 주최하게 된 것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이 그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자금세탁방지 선진국 협의체인 FATF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이행실태에 대한 상호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심사 절차 중 하나로서, 앞으로 FATF 정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은 더욱 제고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적 신인도를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그동안의 업무성과를 돌이켜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점검해보기 위해 2004년 이후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향후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2008년 6월

금융정보분석원장 

# 목 차

## 발 간 사

제 1 편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운영 성과 .....	1
제 2 편	2007년 자금세탁방지정책의 주요활동 .....	15
제 1 장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 .....	17
제 2 장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	21
제 3 장	FIU정보시스템의 발전 .....	35
제 4 장	국제협력의 확대 .....	44
제 5 장	금융회사와의 협조체제 강화 .....	55
제 3 편	2007년 금융거래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69
제 1 장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	71
제 2 장	금융거래정보의 분석 및 제공 .....	81
제 3 장	적발된 자금세탁의 주요 사례 .....	86

<b>제 4 편 2008년도 주요 추진과제와 발전방향</b> .....	93
제 1 장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	95
제 2 장 FIU 정보시스템의 발전 .....	98
제 3 장 국제협력 강화 .....	101
제 4 장 금융회사와의 협조체제 강화 .....	105
제 5 장 심사분석 역량 강화 .....	112
 <b>부 록</b> .....	 115
1. 자금세탁관련 주요 통계 .....	117
2. 금융정보분석원 주요 연혁 .....	125
3.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법률 .....	134
4. 에그몽 그룹 회원 강령 .....	172
5.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저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 금융 조항의 이행을 위한 FATF 지침 .....	181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 제 1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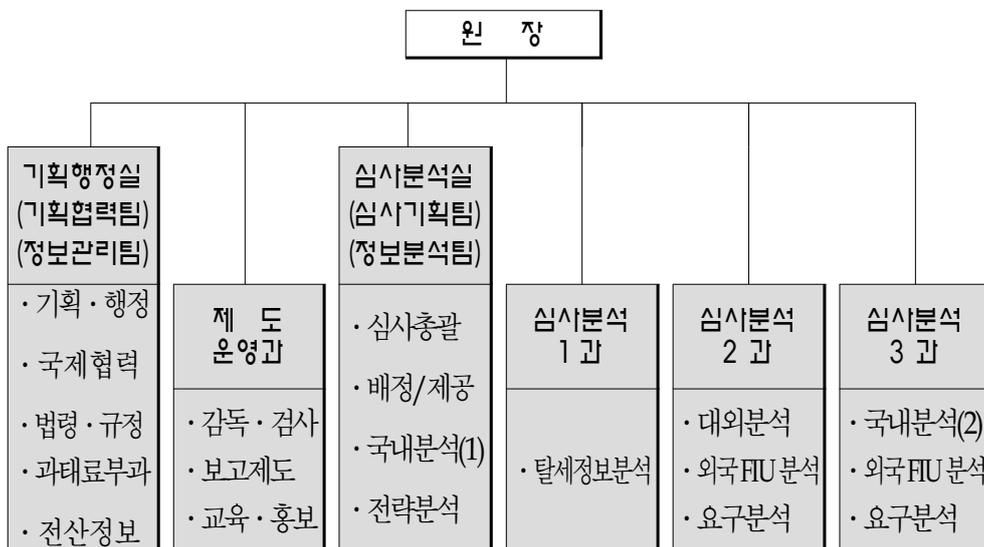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운영 성과



## 1.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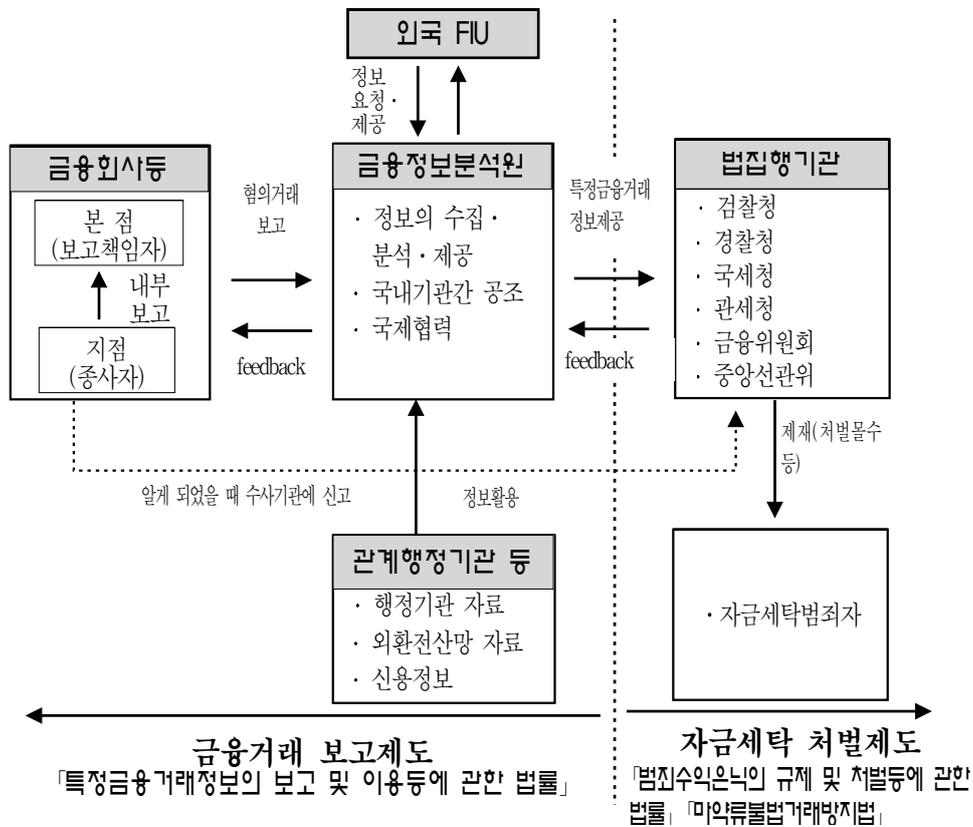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관련 법률 제정과 금융정보 분석원(Ko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출범으로 시작되었다. 즉, 2001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그 해 같은 달 27일 공포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을 갖추게 되었다. 그 해 11월 28일 동 법률이 시행됨과 동시에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였다.

【 금융정보분석원 조직 및 업무분장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과 연계된 금융정보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법집행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직접 혐의거래를 신고하도록 할 경우 금융거래비밀보호 등을 둘러싸고 상호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혐의거래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금세탁관련 금융정보를 금융회사에서 제공받아 심사 분석 후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여과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고객확인 의무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 자금세탁 방지 업무 체계 】



## 2. 자금세탁 방지

### 가. 혐의거래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운영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제도는 크게 혐의거래보고(STR)제도, 고액 현금거래보고(CTR)제도, 그리고 고객확인제도(CDD)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혐의거래보고제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정착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된다. 2001년 11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혐의거래 보고가 2002년에는 275건, 2003년에는 1,744건, 2004년에는 4,680건, 2005년에는 13,459건, 2006년에는 24,149건, 2007년에는 52,481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보완하고 지나치게 현금에 의존하는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보고된 자료는 혐의거래분석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 건수와 금액의 추세를 통해 살펴볼 때 이 제도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2006년 1월 도입 이래 보고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7년 12월의 건수와 금액은 2006년 3월에 비하여 각각 1/3,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거래 중 고액현금 거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 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도입 기반 마련

고객확인제도도 2006년 1월 도입 이래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요건 충족에 주력하였다면, 고객확인제도는 거래자의 주소 등 금융거래의 실질내용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 관행을 한층 선진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007년 12월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란 기존 고객확인에 더하여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라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확인절차를 업무지침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으로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FATF의 핵심권고사항 중 가장 중요한 고객확인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는 기초를 마련한 점에서 FATF 정회원 가입 여건이 보다 개선된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기반 마련

2007년 12월,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2월 부터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카지노의 영업환경에 맞춰 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고객확인제도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5억원 미만의 조세부정환급도 포함)의 경우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조세포탈 방지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2007년은



### 3. 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 구축 기반 마련

또한, 2007년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테러자금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와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였다. 동 법안에서는 입법목적이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있음을 명시하면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근거,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범죄’를 명문화하였다. 이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UN 협약, 2004년 2월 17일 우리나라 국회 비준)의 이행을 위한 국내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거래보고 대상의 범위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의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 4. 자금세탁 방지 인프라 확충의 내실화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제도 수립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또 다른 핵심기능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능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FIU정보시스템은 불법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약 6천개 금융회사와 온라인으로 연계된 보고네트워크와 첨단 분석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하고 깨끗한 금융거래 환경 구축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월 평균 4천여건의 혐의거래보고를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받아 심사분석하여 혐의성이 높은 정보를 검·경,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혐의거래정보 외에도 고액현금거래(CTR), 외환거래 및 지급수단 반출입자료와 심사분석 보조자료인 개인신용정보, 기업정보, 각종 행정자료 등 대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심사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제공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유관기관과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계된 FIU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있어서 전산 Infra의 구축은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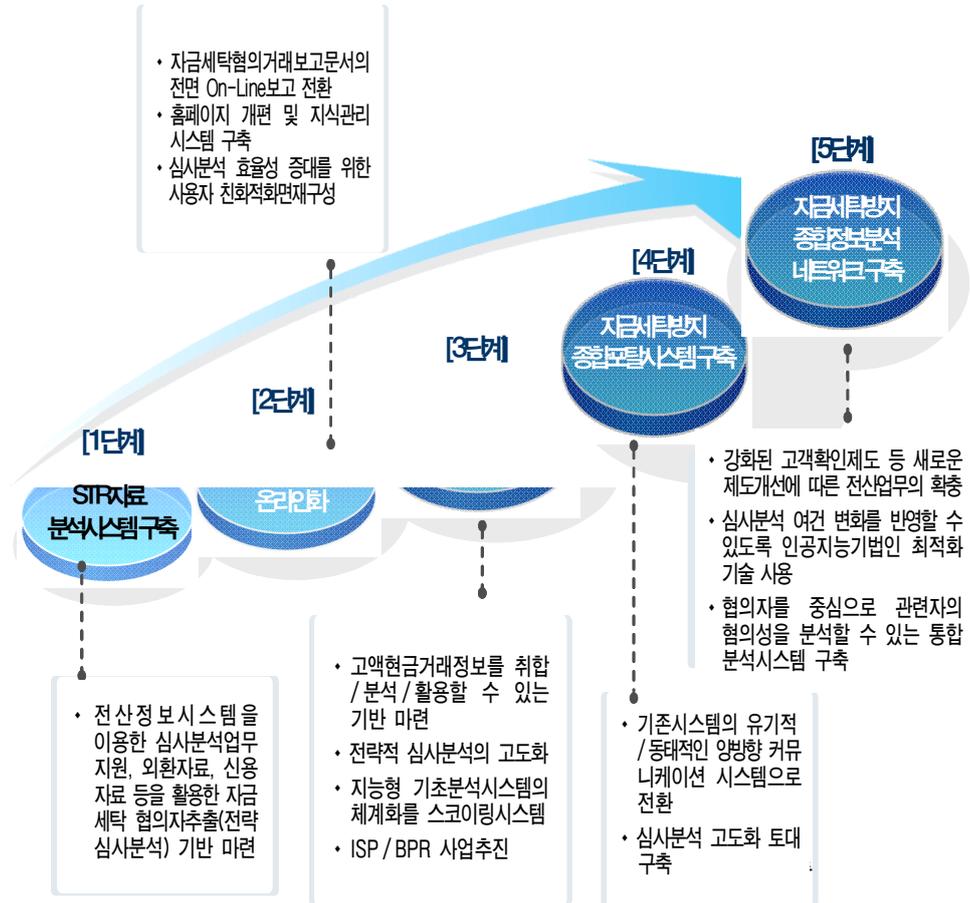
특히 FIU정보시스템은 심사분석 과정에서 혐의거래보고(STR)에 대해 지능형 기술을 이용하여 위험도를 분류하고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심사분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FIU설립이후 '02년도 264건 보고되던 STR이 '07년의 경우 약 5만건으로 190배가량 증가되었으나, 지능화된 심사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많은 인원증원 없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사분석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07년에도 FIU 정보시스템을 확장하고 그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5월, '자금세탁방지 종합정보분석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 동 사업은 새로운 제도개선에 따른 전산 업무의 확충과 심사분석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시스템에 심사분석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인 최적화기법을 적용하여 기초분석 및 배당 단계에서 자금세탁의 혐의성이 높은 STR을 보다 정밀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금거래 연계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고된 혐의자를 중심으로 관련자들과의 금융거래 흐름을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써 자금세탁 유형판별 및 분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분석환경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0월 11일 FIU 정보분석시스템은 한국 전자거래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선정시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동 사례가 중앙부처 혁신 BP발표대회(2007년 10월 10일)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2007년 12월 27일에는 FIU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FIU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개발내용 】



5. 국제협력의 발전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과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국제사회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과 테러자금조달억제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세탁거래와 테러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 여부는 해당국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에 대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 이후 그 동안 전세계 FIU 협의체인 에그몽(Egmont) 그룹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인 APG에도 적극 참여하여 왔다. 특히, 2003년부터 2년간 APG 의장을 수임하고 2004년에는 서울에서 APG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또한, 2006년 6월 사이프러스에서 개최된 제14회 에그몽그룹 총회에서는 2008년 제16차 총회 개최지로 한국을 지정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에그몽그룹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에그몽그룹 총회는 전세계 106개국 FIU대표들이 참여하므로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억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2004년의 제7회 APG총회 개최에 이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관련 두 번째 국제회의 개최로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억제 관련 국제공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그간 우리나라의 FATF 가입과 관련하여, 2006년 8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에 대한 옅저버지위 부여를 승인하였으며, 2006년 10월부터 옅저버 자격으로 FATF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FATF 옅저버 국가는 정회원 가입심사를 위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를 거쳐 2~3년 내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가 FATF 정식 회원국이 되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규범의 제·개정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 국제적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획득하게 되어 국내 금융제도와 금융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국내금융회사의 해외 영업활동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 이래 주요국 FIU와의 MOU 체결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2007년에도 말레이시아, 레바논, 사이프러스 3개국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2007년 말 현재 양해각서 체결국가가 총 36개국이 되었다.

## 6. 자금세탁 방지 제도 운영 내실화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취약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객확인제도의 시행 1년을 평가하고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시행준비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 컨설팅 업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 유도를 위해 포스터(38,000부)와 리플렛(180,000부)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제1회 자금세탁방지의날(2007년 11월 28일) 행사를 전후해서는 TV,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 7. 혐의거래정보의 분석·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 이후 2007년 말까지 총 96,781건(기초분석 71,335건, 상세분석 25,446건)의 혐의거래보고를 심사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범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 등 6개 기관)에 제공한 혐의거래보고 및 관련 분석정보는 총 7,928건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후 2007년 말까지 전략적 심사분석을 통해 총 458건의 혐의거래를 추출·분석하였으며, 이 가운데 60건의 정보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의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범집행기관에 제공되었다. 2007년 한 해 동안에는 전략적 심사분석을 통해 총 91건의 혐의거래를 추출 분석하여 분석 결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총 17건의 정보를 범집행기관에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2007년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체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새로운 체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온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 제 2 편

### 2007년 자금세탁방지정책 주요활동

제 1 장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

제 2 장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제 3 장 FIU정보시스템의 발전

제 4 장 국제협력의 확대

제 5 장 금융회사와의 협조체제 강화



## 제 1 장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

### 1. 테러자금조달 억제 관련 입법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의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에서 2004년 2월 17일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을 서명·비준하였다. 동 국제협약의 주요내용은 테러자금의 개념정의, 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 테러자금의 몰수·동결, 혐의거래보고, 현금 등의 휴대반출입 제한 등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이행입법은 미비하여 위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테러자금조달 관련 입법은 FATF 가입의 핵심 평가사항일 뿐만 아니라, 에그몽 그룹에서도 모든 회원국이 2007년 6월까지 테러자금관련 입법을 완료토록하고 이를 미이행한 국가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의 정지를 고려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현재 에그몽 그룹 106개국 중 80개국이 테러자금조달 억제 관련 입법을 완료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테러자금조달 차단 이행입법을 위해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을 마련하였으며 동 법안은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21일 공포되었다.

## 2.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입법경과

당초 테러자금조달 억제 관련 입법은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FATF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안) 총18개 조문으로 초안이 작성되고, 2006년 3월 30일 재정경제부안이 마련되었다.

그 이후, 같은 해 4월 10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2006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 2006년 8월 1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 9월 22일 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학계, 참여연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12월 11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였다.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당초 범명인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의 ‘억제’를 ‘금지’로 변경하였다. 그 이후 2007년 1월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2월 22일 임시국회에 상정하였다.

2007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①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정의 ②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사전예방조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테러관련자 지정·고시 ③ 테러혐의 금융거래의 동결명령 ④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범죄화 등이었다.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가 동 법률안에 대해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된 테러방지기본법이 먼저 제정된 후에 테러자금조달을 규제하는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권한남용 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대폭 삭제하면서도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에 부합하도록 당초 총 18개 조문을 7개 조문으로 축소하였다.

주요 수정내용은 ① 테러개념을 삭제하고, 테러자금 개념만을 정의하였고 ② 테러관련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제도로 대체하였으며 ③ 테러혐의 금융거래 결정, 테러자금 동결 명령제도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테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테러자금'이라는 용어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대체하였고, 법령칭도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에서 일본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로 변경하였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동 법률은 2007년 11월 23일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1년 후인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다.

### 3.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주요 입법내용

#### 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의 개념정의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동법의 입법 목적을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으로 규정하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정의하였다.

#### 나.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및 고시

동법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고시는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법무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없이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동법은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영하여 금융거래제한 대상과 지정·고시 권한자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금융위원회로 개정하였다.

#### 다.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범죠힌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제정으로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는 다른 형사범죄의 공범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정범으로 처벌되게 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와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제 2 장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 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추진배경

2005년 1월 한차례 개정된 바 있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2006년부터 제2차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의 목적은 FATF 가입을 위한 상호 평가에 대비하여 FATF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 수준을 높이고,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있었다.

###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경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하는 데만 1년여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6년 3월 30일 재정경제부 안을 확정하고, 4월 10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며, 같은해 6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17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그해 12월 11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였다. 그 이후 2007년 1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007년 2월 22일 임시국회에 상정되었다. 그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해 12월 21일 공포되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내용 중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행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 3.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주요 개정내용

#### 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관련 사항의 반영

개정 법률에서는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상의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함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중협박자금조달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인무 부과 근거 마련

종래 카지노 사업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환전영업자로서 외화환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지노의 성격상 일반 금융회사에 비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또한 최근 카지노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카지노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여 임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sup>1)</sup>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카지노사업자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혐의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1) 군 장성에 뇌물을 준 허건설사를 협박하여 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한 법조브로커 윤모씨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랜드에서 자기앞수표등 합계 약 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산 뒤, 이를 다시 강원랜드 발행의 수표와 현금 등으로 바꿔 고위인사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규정하였다. 다만, 보고대상금액 및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일반 금융회사와 다른 카지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달리 적용될 것이다.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로 향후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카지노 업계 및 관광산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범위 확대

종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부정환급과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번 법개정을 통하여 원화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5억원 미만의 조세부정환급 포함)의 경우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내역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금신고내용 등을 종합·대조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유도 및 조세포탈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 과태료의 상한 조정

종래 금융회사 등의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은 500만원이었다. 그동안 상한 금액이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개정안에서는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1건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당초안의 상한금액은 2천만원이었으나 재경위 논의과정에서 단기간의 급격한 과태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1천만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 마.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도입근거 마련

### (1) 고객 확인제도 강화 추진배경

2006년부터 시행된 고객확인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계좌의 신규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률적 고객 확인이 고객확인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신원확인만으로는 고객확인제도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고객을 충분히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때,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고객을 알도록 하는 것 보다는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거래의 목적·배경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6년 시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에서도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주관적·전문적 판단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그러나 고객 유형이나 금융거래 유형에 따른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고객확인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FATF 기준 회원국의 경우에도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제도가 불가피하게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지나치게 구체적인 법령화가 곤란하고, 전반적인 금융거래 관행이 바뀌어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고객 및 거래에 대한 획일적인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고객의 업종과 금융상품 및 지역 등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도가 큰 고객이나 금융상품 및 특정지역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FATF 권고사항 평가방법 제5조 제8항에서는 “금융회사는 위험도가 높은 유형(higher risk categories)의 고객이나 거래관계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주의의무(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고객확인제도에 관한 리스크중심 접근방법에 관한 지침(FATF Guidance on the Risk-based Approach to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을 제정하여 이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금세탁이나 불법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목적달성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고객 및 거래의 위험을 고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 (2)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의 법적근거 마련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지침에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법은 2007년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었으며, 강화된 고객확인 과 관련된 규정은 1년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차등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의 위험도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지침에는 i)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리스크평가 절차 구축 ii)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고객 및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내용·방법 및 절차 iii) 고객확인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위험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예를 들어 FATF 권고사항 제6조에서는 정치적 주요인물(PEPs : Politically exposed persons)과의 거래에 대한 권고사항 제5조 제8항의 위험기반 고객확인을 위하여 i) 고객(실소유자 포함)이 고위험 유형의 고객 또는 거래관계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마련해야 하고, ii) 고위험 유형과의 계좌 신규개설시에는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좌개설 후에 당해 고객이나 실소유자가 고위험 유형임이 판명되거나 그 유형에 속하게 된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를 유지해도 좋다는 승인을 임원진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iii) 금융회사는 고위험 유형의 거래가 지속되는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3)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한 위험기반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의 위험도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가·고객·상품 및 서비스 유형별로 자금세탁과 관련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험평가는 각 금융회사가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가급적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고객의 경우는 업종, 거래유형, 거래빈도 및 규모 또는 예치된 자산액 등을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는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또는 제3자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통해 위험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확인제도와 관련한 바젤위원회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에는 고위험 고객유형으로 비거주 고객, 프라이빗 बैं킹, 법인 또는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신탁과 같은 법률관계, 명의주주나 무기명 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 등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은 위험평가를 거쳐 선별된 고위험군에 대하여 기존의 고객확인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등 고객확인 내용, 절차 및 방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FATF 권고사항 제7조에서는 국경간 환거래계약(cross-border correspondent banking)이나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금융회사들이 기존의 고객확인의무에 부가하여 i) 새로운 환거래 계약을 하기 전에 임원진으로부터 승인 취득 ii) 각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방지 책임을 문서화 iii) 환거래요청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통제수단을 평가하고 그 적절성과 실효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이후에도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을 평가하는 등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고객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분석결과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FATF 권고사항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가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거래유형, 각종 서비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금융거래가 많은 대형 금융 회사의 경우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 에서 열거하는 9개의 국제협약상의 범죄행위**

- (1)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1970, 헤이그)
- (2)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71, 몬트리올)
- (3)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73, UN총회)
- (4)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1979, UN총회)
- (5)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1980, 비엔나)
- (6)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1988, 몬트리올)
- (7)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1988, 로마)
- (8)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88, 로마)
- (9)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7, UN총회)

### <참고> 테러의 개념정의 관련 해외 입법례

- 테러의 개념 정의는 개별 국가의 법체계, 테러에 노출된 상황 등에 따라 각기 달리 정의되고 있음
- 미국(US Code of Criminal law Title 18 Part I §2332b, PATRIOT Act §808)
  - 우리 법안과 동일하게, 간략히 정의된 일반적 테러 개념 내에 테러행위의 유형을 열거
    - \* 협박 등에 의하여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계획된 행동으로서 국제 협약상 테러행위로 열거된 국내 해당범죄들을 범하는 경우를 테러범죄로 정의
- 영국(Terrorism Act 2000 Part I Section 1)
  - 일정한 주관적 요건 하에 테러의 객관적 행위태양을 결합하여 정의
    - i)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 ii)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목적을 실현할 의도 하에 계획된
    - iii) 일정한 유형의 행위(개인에 대한 중대한 폭력, 심각한 재산권침해, 살인 · 중상해, 공중의 보건 · 안전에 심각한 위험창출, 전기전자시스템의 심각한 장애 초래)
  - 다만, 폭발물에 의한 테러의 경우 i)의 주관적 요건 없이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 있는 경우 테러행위에 해당
- 호주(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ct 2002 Part 5.3)
  - 영국법과 유사하게 중첩적인 주관적인 요건을 요구하면서 테러의 객관적 행위태양을 결합하여 정의
    - \* i)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실현할 의도 하에 ii)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계획된 iii)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
  - 다만, 우리 법안과 유사하게 지지 · 저항 · 반대를 위한 행위 등을 하면서, 사람의 신체 · 생명에 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험을 가할 의도를 가지지 않은 행위는 일반적 테러개념에서 배제
- 캐나다 (Criminal Code of Canada Part II.1 §83.01)
  - 9개 국제협약상의 테러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법상 테러 개념에 부합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열거 방식과 일반적 개념정의 방식을 병용
    - \*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계획되어, 개인 · 정부 · 국제기구 등이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생명 · 신체상 위해를 가하거나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

**<참고> 테러자금 동결에 관한 국제적 규범 및 해외 입법례**

- 테러자금 동결에 관한 국제적 규범으로서 우리나라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는 i)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9) ii) UN안보리 결의 제1267·1373·1452호(1999·2001·2002) 등이 있는바,
  - 위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UN Al-Qaeda and Taliban Sanctions Committee)에서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탈리반에 연루된 자를 테러관련자로 지정하면서
  - 인도주의적 필요가 있는 개별·구체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위 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의 자금, 금융자산 및 그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유래한 수익 일체를 동결할 것을 결의
- FATF 40+9 권고사항 중 테러관련 특별권고사항에서는 테러자금 동결제도의 설계에 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바,
  - 각국은 테러자금 동결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지정할 권한이 있으며,
  - 국가간 협력을 위해 각국은 외국의 테러자금 동결제도 하에서 취해지는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국에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
- 각국은 위와 같은 협약, 안보리 결의 등에 따라 테러에 노출된 상황, 기존의 법제도와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테러자금 동결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 미국의 경우 1996년 외국테러단체의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한 이후, 2001년 global terrorism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명령 제13224호\* 및 PATRIOT ACT에서 동결제도를 강화하였고,
    - \* 테러관련자로 지정된 자의 재산 및 그에 대한 권리로서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의 관할 범위에 속하게 되거나 미국인이 관리하게 되는 모든 재산·권리는 동결되며, 테러관련자의 재산·권리에 관하여 미국 사람에 의한 것이거나 미 합중국 관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 또는 교섭도 금지하는 내용
  - 영국의 경우 2000년의 “테러방지법”, 2001년의 “반테러, 범죄 및 안보에 관한 법률”에서 테러관련 종합대책을 규정하면서 재무부에 동결명령\*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 \* 어떤 개인·단체가 영국 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영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재무부가 합당한 근거를 들어 판단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동결명령(Freezing Order) 발령 가능
  - 호주의 경우 2002년 테러자금조달억제법을 제정하면서,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범죄화, 혐의거래보고 등과 함께 테러관련자 지정 및 테러자산 동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함

### <참고>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 해외사례

#### ● FATF 40+9 Recommendation

-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과 USD 3,000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확인 의무),
  -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거래사실을 보고하며 (혐의거래보고)
  - 관련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기록보존의무)
- 관계기관은 카지노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관하여 감독하여야 함

#### ● 미국 (Bank Secrecy Act)

- 적용대상 :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연간 총수익이 1백만불 이상인** 카지노 사업자
- **고객현금거래보고, 기록보존의무 및 고객확인절차**
  - 1만불 이상의 현금의 지급·영수가 있는 경우
  - 카지노는 거래성립 이전에 **고객의 이름·주소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계좌번호·납세자번호 등을 기록 (기록보존의무 및 고객확인절차)
  - 그 거래사실은 **FinCEN(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바, 고객이 1만불 이하로 분할거래를 한 경우에도 카지노 사업자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보고해야 함
    - \* 카지노의 법규준수 과정이나 통상적인 영업절차에 따라 획득된 정보(영업장부, CCTV 기록 등)에 의해 카지노 종업원들이 고객의 분할거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카지노 사업자가 안 것으로 간주됨
- **혐의거래보고**
  -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서
  - 거래 금액이 **5천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거래사실을 FinCEN에 보고
  - \* 이외에도 카지노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직원교육 등 법규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의무를 부과

● 영국 (Money Laundering Regulation 2003)

○ 고객확인절차

- 영국의 금융회사(카지노 포함)는 i)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알게 된 경우 ii) 1만5천 유로 이상의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 의무를 짐
- 나아가 영국의 카지노 사업자는 고객에게 카지노 게임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기 전에 고객의 신원에 관한 증거를 확보(예: 카지노 입구에서 서류작성)해야 할 의무를 짐

○ 혐의거래보고

- 카지노 사업자는 고객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액의 다과(多寡)에 관계없이 그 거래사실을 SOCA(영국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호주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 고객현금거래보고 및 고객확인절차

- 카지노 사업자는 고객과 1만 호주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시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AUSTRAC(호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혐의거래보고 : 영국의 경우와 동일

● 캐나다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 고객현금거래보고 및 고객확인절차

- 카지노 사업자는 고객과 1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현금거래시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FINTRAC(캐나다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 혐의거래보고 : 영국의 경우와 동일

### <참고> 탈세행위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해외 사례

#### ● 미 국

- 국제기본법(Internal Revenue Code) 위반행위도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에 해당
- 미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인 FinCEN은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금융 거래정보\*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관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고
  - 국세청을 포함한 법집행기관의 장은 정보제공의 목적(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관련 조사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정보제공 요구 가능
- \* 혐의거래보고 : 5천달러 이상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FinCEN에 보고
- \*\* 고액현금거래보고 :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의 지급·영수시 FinCEN에 보고 ('90년 FinCEN 설립 이전에는 국세청(IRS)에 보고)

#### ● 영 국

- 모든 형사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하므로, 탈세범죄도 이에 포함됨
- 모든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 Offence)는 혐의거래의 보고 대상이 되므로 탈세범죄도 이에 포함

#### ● 호 주

- 법정형 1년 이상의 기소 가능한 형사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하며, 탈세범죄도 이에 포함됨
- 또한, 혐의거래보고대상에 세금탈루·조세포탈의 경우를 별도로 명시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STR·CTR 자료에 접근 가능함을 명시하여 국세청에 동 자료 제공이 가능

#### ● 캐나다

- 조세·관세포탈 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기구(FinTRAC)는 보고받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결과 조세·관세포탈 범죄 관련 금융거래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관세·국세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에 제공하고 있음

## 제 3 장 FIU정보시스템의 발전

### 1. FIU정보시스템(GOOD FINDER) 개요

FIU정보시스템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종합 정보분석시스템으로 2007년까지 5단계에 걸쳐 시스템을 확장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왔다.

#### 단계별 개발내역

- ✓ 1단계('02년) : STR자료의 분석시스템 도입
- ✓ 2단계('04년) : 금융회사 보고의 온라인화
- ✓ 3단계('05년) : CTR자료의 분석시스템 도입
- ✓ 4단계('06년) : 자금세탁방지 종합포탈사이트 구축
- ✓ 5단계('07년) : 자금세탁방지 종합정보분석 네트워크 구축

특히 2001년 11월 조직출범 시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 정착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일관성 있는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자금세탁방지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이라는 정보화 비전을 채택하고 2대 목표와 5개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FIU정보시스템은 선진국의 자금세탁관련 정보화 구축사례를 통해 정보 관리·분석의 장점을 취하되 우리의 금융거래관행 등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하게 되었다.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특정금융정보 관리 시스템과 정보분석 시스템으로 나누었으며, 입수된 혐의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검찰·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세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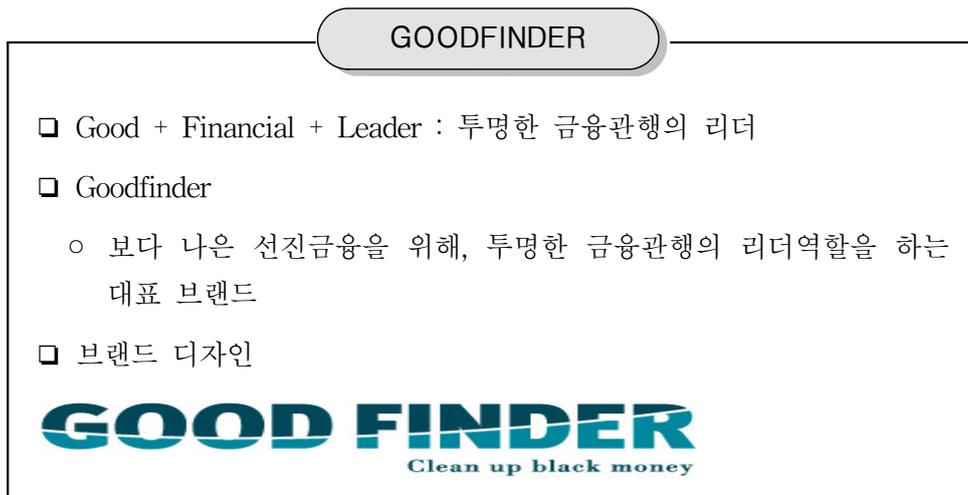
특정금융정보 관리시스템은 정보문서의 처리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로부터 혐의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동일인 또는 동일계좌로 보고된 다른 정보문서가 있는지를 검색하여 보여주는 ‘관련건 검색 기능’과 거래 관련자를 등록하면 제공하는 ‘시스템 내 입수 자료 요약화면 기능’을 갖추는 등 정보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혐의거래정보 분석시스템은 접수된 STR을 기초분석을 통해 배당 및 담당자 지정을 거쳐 상세분석·제공 등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사안별 심사분석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분석 시스템은 심사 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검색, 다차원분석, 연계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합검색이란 실명번호 등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인에 대한 혐의 거래, 외국환거래, 고액현금거래, 신용정보 등을 검색하는 기능이며, 다차원분석이란 여러가지 관점에서 데이터를 가공함으로써 의미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분석 기능을 의미한다. 또 연계분석은 거래관계, 인적 관계 등으로 연결된 개인이나 계좌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심사 분석자가 혐의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석 도구이다.

룰·스코어링분석은 거래내역 및 수단 등 혐의거래정보, 외국환거래, 신용정보, 고액현금거래 등의 혐의변수와 거래 패턴별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이용하여 혐의성이 높은 등급만을 선별하는 분석기법이다. 이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외환거래자료 및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만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혐의거래 건을 추출하는 전략적 심사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FIU 정보시스템을 혁신 브랜드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브랜드 이름붙이기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FIU 정보시스템을 자금세탁방지 관련 중추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반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Brand Slogan과 이미지 디자인을 추진한 결과, FIU 정보시스템의 이름을 “GOOD FINDER”로 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5주년(2006년 11월 28일)에 발표하였다. 동 브랜드명 선정에는 전문성·친근성·글로벌 이미지 등이 고려되었다.



## 2. FIU정보시스템(GOOD FINDER) 5단계 개발

### 가. 사업개요

그동안 FIU정보시스템은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효율적인 심사분석을 수행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과 자금세탁 기법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왔다.

제5단계 시스템 개발은 기존 FIU 정보분석시스템을 환경변화에 유연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정보의 흐름과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시스템이 심사분석 여건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분석 및 배당 단계에 인공지능 기술인 최적화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환경변화에 따라 통계 가중치 등이 자동적으로 재조정되고 분석 결과를 피드백 함으로써 혐의도 분류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시행, 카지노 부문의 자금세탁방지 보고 의무 부과, 테러자금 조달 금지법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전산업무를 확충하였다. 아울러 혐의자를 중심으로 관련자들과의 금융거래 흐름을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써 자금세탁 유형판별 및 분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자금거래 연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기존 업무 방식의 합리적 재설계를 통하여 심사분석 DB확충 등으로 심사분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된 지식의 체계적인 축적과 활용에 기여토록 추진하였다.

사업명칭은 ‘자금세탁방지 종합정보분석 네트워크 구축’으로 하였으며, 2007년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을 완료하였다.

#### 나. 추진내용

##### (1) 새로운 제도 개선에 따른 전산 업무의 확충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와 연계된 자금세탁 방지 종합 정보분석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즉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도입할 혐의거래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된 정보분석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해 혐의거래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보다 혐의성이 있는 STR에 대해서는 FIU에 보고하는 2중의 분석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실무작업반을 운용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위험 고객 및 거래유형에 대한 차등화된 위험분류 방법, 고객 신원확인 절차 재설계 기준, 개선된 전산 보고서식(STR, CTR)을 마련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FIU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표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카지노 사업자가 보고기관으로 포함됨에 따라 카지노 부문에 적합한 전산 보고서식(STR, CTR)을 개발하고 보고 네트워크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에 맞추어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전산화도 추진하였다.

## (2) 지능형 심사분석 기능 고도화

STR보고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접수·배당 단계에서 혐의거래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룰·스코어링 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였다. 즉 기존 스코어링시스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STR과 관련된 거래자 및 거래의 세부요소(신용상태·거래수단 등 124개 변수 사용)별 자금세탁 혐의도를 통계적 보정작업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룰시스템은 과거의 심사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사용률이 저조한 유형, 법집행기관 제공률이 낮은 패턴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위험도를 재조정하였다.

아울러 룰·스코어링 시스템이 심사분석 결과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신의 통계기법 중 하나인 인공지능 기법(최적화기법)을 적용하였다. 즉 환경변화에 따라 통계 가중치 등이 자동적으로 재조정되게 함으로써 지능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혐의도 등급의 신뢰성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시켜 나가도록하는 것이다. 이는 기초분석 및 배당시에 전산시스템에 의한 위험 분류의 적중률을 제고하도록 환경변화에 따라 통계 가중치가 학습에 의해 자동적으로 재조정되도록 하였다.

### (3) 통합연계 및 자금거래 분석시스템 구축

현재 FIU에는 심사분석을 위한 다차원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만 금융회사에서 STR(혐의거래 보고서)에 첨부되어 입수되는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분석 기능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복잡한 금융거래를 포함한 STR(혐의거래보고서) 분석 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원인은 STR에 첨부되는 계좌거래 내역이 금융회사별로 “엑셀, Text, PDF 등” 여러 형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먼저 데이터 구성 형식을 파악한 후, 실제 거래내역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상세분석 기간중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시간이 계좌거래 내역 분석에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부 금융거래 자료를 표준화하여 공통 서식에 의해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계좌거래 내역을 이미지로 도식화하여 심사분석자가 자금의 흐름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거래가 발생한 시간 순으로 자금의 흐름을 동적으로 표현하여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고, 혐의거래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계좌에 대한 기존 자료와의 연계관계를 표현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혐의자를 중심으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흐름을 이미지로 보여줌으로써 자금세탁 유형판별 및 분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존의 STR보고서, 외환자료, 고액현금거래 등과의 연계관계 까지도 한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 관계나 점조직 형태의 자금세탁 범죄를 시스템적으로 발굴이 가능하게 되었다.

#### (4) 업무방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BPM<sup>2)</sup>도입

BPM 도입을 통해 표준화된 심사분석 업무의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즉 단순·반복업무에 대한 처리를 자동화하여 제도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성이 뛰어난 차세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업무의 합리적 재설계를 통해 심사분석 업무의 표준화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데이터 통합 및 입수 자료 표준화와 심사분석 업무의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심사분석 진행 경과 표시 및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아울러 심사분석 프로세스 상시 모니터기능 개발 등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 (5) 심사분석 DB의 확충 및 시스템 개선

기존에 문서로만 관리되던 심사분석에 유용한 자료(예, 법집행기관의

---

2)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은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및 자동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으로서 신속한 업무변경,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등 업무의 흐름(Work Flow)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

조치결과, 세적자료 등 심사분석 보조자료, 혐의거래보고 시 추가 입수되는 금융거래 자료 등)를 신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전체 상세 심사분석 기간 중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방식의 심사분석 보조자료<sup>3)</sup> 입수방식을 온라인으로 입수되도록 개발하였다.

5단계 정보화 사업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STR에 대해 지능화된 심사분석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분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심사분석자 증원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곧 업무효율성 향상 외에 인건비 등 경비절감 효과로 연결된 것이다.

또한 자금거래 연계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분석방식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관계나 점조직 형태의 자금세탁범죄를 시스템에서 적발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자금세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

3) 입수 행정자료의 종류: 주민자료, 호적부, 범죄경력, 사업자등록, 토지보유현황, 건강보험, 고용보험, 출입국기록, 수출입통관 등 9종

## 제 4 장 국제협력의 확대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기구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구인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및 전세계 FIU들 간의 협의체인 Egmont Group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중추적인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는 2006년 10월부터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통상적인 FATF 가입절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옵저버 지위 부여 후 2년 내에 FATF 권고사항 이행현황에 대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를 거쳐 정회원 가입여부를 승인받게 되므로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FATF 가입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APG 활동

APG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해 1998년 3월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APG는 FATF 평가방법론에 의거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역내 국제기준 이행 및 국제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 1회 총회를 개최하여 상호평가보고서의 검토·채택 및 과거 상호평가 수검국의 이행경과 검토를 실시하고, 연 2회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통해 자금세탁 최신 동향의 발굴 및 대응 방안 마련, 정보 교환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7월 23일 ~ 7월 27일 기간 중 호주 퍼스에서 개최된 APG 제10차 연차총회에서는 나우루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신규 회원가입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APG 회원국 수는 2007년말 현재 총 36개국<sup>4)</sup>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지난 2005년 총회 이후 시작된 APG의 제2차 상호평가 프로그램(2nd Round Mutual Evaluation Program)에 의거, 2007년 총회에서는 마카오, 몽고, 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6개국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가 검토·채택되었으며, 2004년에서 2006년 기간 중 상호평가를 받은 미국·호주 등 13개국의 이행경과보고가 있었다. APG의 상호평가는 평가 대상국 외의 회원국에서 파견된 평가자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되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 총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된 6개국 중 2개국(대만, 몽고)에 대한 상호평가에 금융부문 평가자를 파견하였으며, 동 총회에서 평가결과를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제1차 상호평가를 받은 국가로서 동 총회에서는 상호평가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상호평가는 FATF/APG 공동평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008년 2월 FATF총회에서 FATF, APG측과 일정을 협의한 결과 2008년 11월중 상호평가를 실시하기를 합의한 바 있다.

---

4) 2006년 말 현재 APG 회원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캐나다, 대만, 쿡제도,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마셜군도, 몽고,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니우에, 파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군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통가, 미국, 바누아투, 베트남

## 【APG 총회 개최 현황】

차 수	개 최 국	개 최 시 기
제 1 차	일 본	'98.3월
제 2 차	필 리 핀	'99.8월
제 3 차	호 주	'00.6월
제 4 차	말 레 이 시 아	'01.5월
제 5 차	호 주	'02.6월
제 6 차	마 카 오	'03.9월
제 7 차	한 국	'04.6월
제 8 차	호 주	'05.7월
제 9 차	필 리 핀	'06.7월
제10차	호 주	'07.7월
제11차	인 도 네 시 아	'08.7월 (잠정)

## 2. Egmont Group 활동

Egmont Group은 각국 FIU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FIU의 신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5년 6월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이 주축이 되어 13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다.

Egmont Group은 설립 이후 정식 국제기구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활동해 왔으나, 회원국 수가 100여개국으로 증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공식 국제기구로서의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Egmont Group의 공식 국제기구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7년 총회에서는 'Egmont Group 회원강령(Egmont Group Charter)'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동 회원강령은 공식 국제기구로서의 Egmont Group의 성격,

회원강령의 성격, 에그몽 FIU 정의, 회원자격, 재원조달 방식, 조직 구조, 에그몽 그룹 기준 미이행시의 처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총회에서는 또한 회원국들의 개정된 '에그몽 FIU 정의' 이행 현황 및 미이행국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Egmont Group은 2004년 건지(Guernsey) 총회에서 「운영규약(Statement of Purpose)」상의 'FIU 정의(Egmont FIU Definition)'에 자금세탁과 관련한 혐의 거래보고 뿐만 아니라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혐의거래보고의 접수, 분석, 제공을 추가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2007년 총회 전까지 개정된 정의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7년 총회에서 법률실무그룹(Legal Working Group)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 총 22개 회원국이 개정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총회 기간 중 개최된 FIU 원장회의에서는 개정된 정의 미이행 국가들이 향후 1년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2008년 5월에 개최될 제16차 총회에서 이들에 대한 회원자격 정지 등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제도개선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으며, 2007년 11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금번 제·개정된 법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 뿐만 아니라 테러자금조달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Egmont Group의 개정된 FIU 정의 이행기준을 무난히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제16차 Egmont Group 총회는 5월 25일(일)~29일(목) 기간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세계 100여개국 FIU 원장 및 관계자들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의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3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도 Egmont Group 서울 총회 개최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2009년 중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정책적 홍보의 기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에그몽 총회 개최 현황 】

차 수	개 최 국	개 최 시 기
제 1 차	벨 기 에	'95.6월
제 2 차	프 랑 스	'95.11월
제 3 차	미 국	'96.4월
제 4 차	이 태 리	'96.11월
제 5 차	스 페 인	'97.6월
제 6 차	아 르 헨 티 나	'98.7월
제 7 차	슬 로 바 키 아	'99.5월
제 8 차	파 나 마	'00.6월
제 9 차	네 델 란 드	'01.6월
제10차	모 나 코	'02.6월
제11차	시 드 니	'03.7월
제12차	건 지	'04.6월
제13차	미 국	'05.6월
제14차	사 이 프 러 스	'06.6월
제15차	버 뮤 다	'07.5월
<b>제16차</b>	<b>한 국</b>	<b>'08.5월</b>

### 3. FATF 가입 추진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Task Force를 설립키로 합의함에 따라 2000년 OECD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8월말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32개국 및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sup>5)</sup>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중추적인 국제기구로서 국제기준의 제정 및 이행 도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수법에 대한 연구 및 대응수단 개발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FATF의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 방지 관련 40개 권고사항 및 9개 특별권고사항은 자금세탁 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서 현재 약 170여개 국가에서 실행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FATF 및 산하 지역기구(FSRB; FATF-Style Regional Body)의 상호평가 등을 통해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부터 FATF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8년 정회원 가입심사를 위한 상호평가를 거쳐<sup>6)</sup> 2009년 중 정회원 가입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제도 개선 및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5)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중국, 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

6) FATF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옵저버 자격 부여 이후 2년 내에 상호평가를 실시

### 가. FATF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FATF 가입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FATF 권고사항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FATF 핵심권고사항 중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고객확인제도, 혐의 거래보고제도, 기록보관의무는 이미 국내에 도입하였다. 또한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효과적 예방을 위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 및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고객 유형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고객확인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2007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해 12월 21일 공포됨으로써 FATF 권고사항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존 제도의 선진화 및 기타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단계적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나. FATF Contact Group과 협의 진행

우리나라가 '06년 8월 FATF 옵저버 자격을 취득하고, '07년 2월에는 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 가입절차 관련 자문 역할을 담당할 실무 그룹인 'Contact Group'이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의 Contact Group은 FATF 사무국, APG 사무국,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태리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 일정이 확정 될 때까지 매 총회시마다 회의를 갖고 우리나라의 FATF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검토하였다. 이 Contact Group을 2008년 2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일정이 2008년 11월로 결정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하였다.

우리나라는 '07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거친 Contact Group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FATF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설명하고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07년 10월에는 FATF 6개 핵심권고사항의 국내 이행현황에 관하여 모의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은 바 있다.

#### 다. 「FATF 가입준비 관계기관 T/F」 구성 및 활동

FATF 40+9권고사항은 금융, 사법, 국제공조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FATF의 성공적 가입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소관 분야에 대한 국내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FATF 권고사항의 국내이행현황을 파악하고 이행계획수립을 위해 19개 정부부처·민간기관으로 구성된 「FATF 가입준비 관계기관 T/F」<sup>7)</sup>가 2007년 5월 구성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FATF 6개 핵심권고사항과 관련된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및 생명보험협회가 참석하여 제1차 관계기관 T/F회의를 가졌으며, 동 T/F 회의에서 FATF 핵심권고사항과 관련된 국내 이행상황 점검, 통계 등 자료수집,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11월 상호평가를 거쳐 2009년 중 정회원 가입을 완료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7) 정부 : 재정경제부(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책국)·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금융감독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  
민간 :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생명보험협회

우리나라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 대하여 FATF측과 주요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FATF의 회원가입요건과 관련한 논의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4. 외국 FIU와 정보교환 등을 위한 MOU 체결

국경간 자금의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국가에 걸친 자금세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들 간의 금융거래정보 교환은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여타의 정부간 정보교환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FIU들은 업무상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의 대표적인 절차가 정보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1년 설립 이래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들과 금융거래정보의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MOU는 기관간 약정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서명으로 발효하게 되는데, 그 법적 근거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있다.

동법 제8조 ①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조 ②항은 외국 금융 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의 조건으로 i) 정보가 제공된 특정 목적 외에 제공 정보의 이용 불가, ii) 제공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iii) 금융정보 분석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 제공 정보를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이용 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 법에 의해 상호주의 원칙하에 외국과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의 일부 국가는 문서화된 합의가 없을 경우 정보교환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법률에서 제시한 정보교환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금융정보 분석원은 설립 이래 외국 FIU와의 MOU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MOU는 우선 양 당사자간에 자금세탁 또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와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할 것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이유, 사용용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제공된 정보에 대한 엄격한 비밀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도 말레이시아, 레바논, 사이프러스 3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2007년말 현재 총 36개국 FIU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간 체결 대상국 선정에는 상대방 국내법상 정보교환을 위한 MOU 필요 여부, 자금세탁 위험성, 우리나라와의 거래규모 등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향후에도 외국 FIU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와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 및 최근 FIU가 설립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 외국 FIU와 MOU 체결현황 】

(2007. 12. 31 현재)

연 번	국 가	FIU	체 결 일 자
1	벨 기 에	CTIF-CFI	2002. 3. 11
2	영 국	NCIS-ECU	2002. 10. 7
3	폴 란 드	GFI	2002. 10. 14
4	브 라 질	COAF	2003. 2. 10
5	호 주	AUSTRAC	2003. 5. 28
6	볼 리 비 아	UIF	2003. 9. 15
7	루 마 니 아	ONPCSB	2003. 10. 6
8	인 도 네 시 아	PPATK	2003. 10. 20
9	베 네 수 엘 라	UNIF	2003. 11. 6
10	콜 롬 비 아	UIAF	2003. 11. 7
11	일 본	JAFIO	2003. 12. 18
12	핀 란 드	RAP	2004. 1. 30
13	필 리 핀	AMLC	2004. 6. 17
14	태 국	AMLO	2004. 6. 17
15	캐 나 다	FINTRAC	2004. 6. 23
16	아 일 랜 드	MLIU	2004. 6. 23
17	과 테 말 라	IVE	2004. 9. 7
18	프 랑 스	TRACFIN	2004. 10. 23
19	포 르 투 갈	UIF	2004. 10. 29
20	스 페 인	SEPBLAC	2004. 11. 11
21	미 국	FinCEN	2004. 11. 23
22	알 바 니 아	DCFAML	2004. 12. 31
23	파 라 과 이	SEPRELAD	2005. 4. 5
24	러 시 아	FMFS	2005. 6. 29
25	칠 레	UAF	2005. 6. 30
26	바 하 마	Bahamas FIU	2005. 6. 30
27	우 크 라 이 나	SDFM	2005. 9. 23
28	몰 도 바	OPCML	2005. 9. 23
29	중 국	CAMLMAC	2005. 11. 15
30	홍 콩	JFIU	2006. 4. 6
31	멕 시 코	MexFIU	2006. 6. 13
32	덴 마 크	Hvidvasksekretariatet	2006. 10. 11
33	대 만	MLPC	2006. 11. 29
34	말 레 이 시 아	UPW	2007. 4. 30
35	레 바논	SIC	2007. 11. 02
36	사 이 프 러 스	MOKAS	2007. 12. 17

## 제 5 장 금융회사와의 협조체제 강화

### 1. 자금세탁방지 교육·홍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정확한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에는 각 금융회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자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은행, 증권 등 각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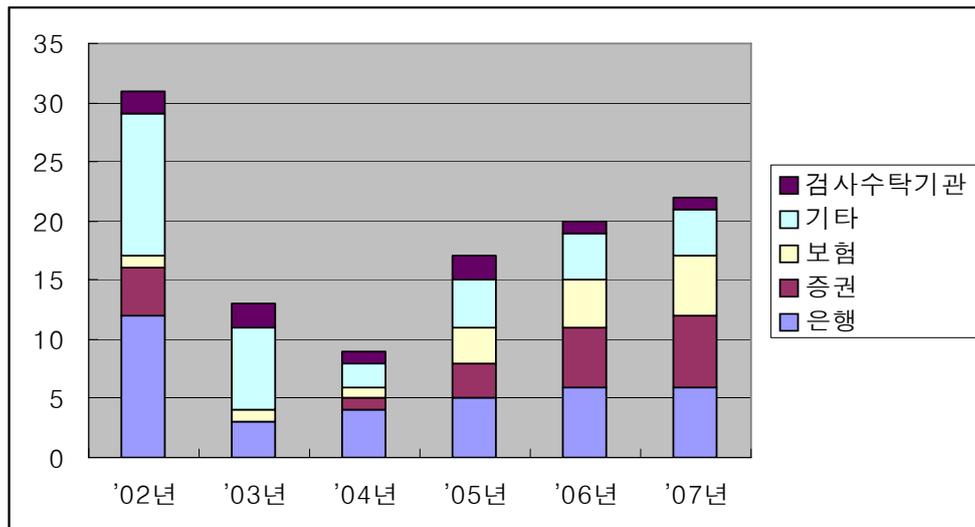
2007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교육관련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고객확인제도(CDD) 시행 1년 평가 및 강화된 CDD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등도 개최하였다.

또한 검사수탁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검사정보를 상호 교류하기 위해 검사수탁기관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 【 연도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실적 】

(단위 : 회수)

	은행	증권	보험	기타	검사수탁기관	계
'02년	12	4	1	12	2	31
'03년	3	-	1	7	2	13
'04년	4	1	1	2	1	9
'05년	5	3	3	4	2	17
'06년	6	5	4	4	1	20
'07년	6	6	5	4	1	22
계	36	19	15	33	9	112



또한 은행연합회 주관 자금세탁방지업무 책임자(은행권 20명내외) 및 실무자(은행권 35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이 출강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방향, 심사분석 우수사례, 검사·감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해 평가·토론하는 한편, 업무처리와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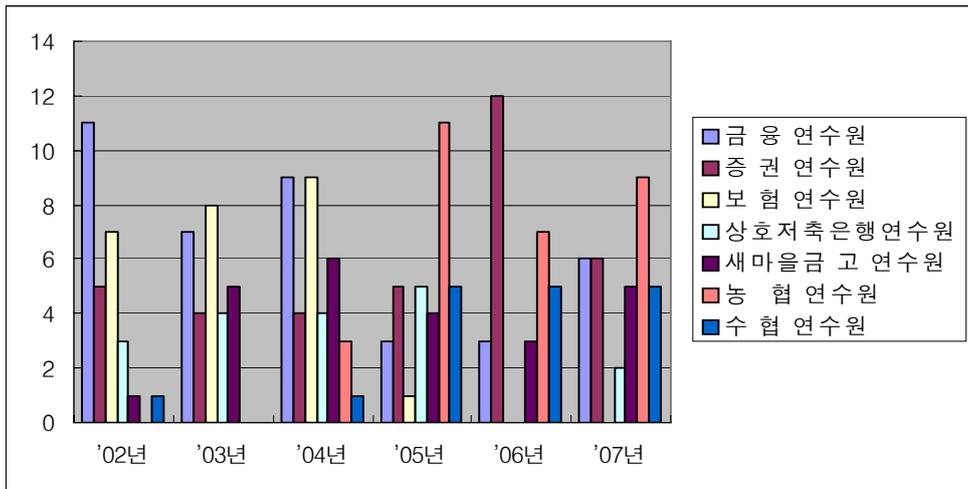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성공여부는 고객과 창구에서 접촉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보고에 달려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제도 내용 및 최근 동향 등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연수원, 증권연수원, 농협연수원 등 금융관련 연수원의 출강요청에도 적극 응하는 등 금융관련 교육 기관의 자금세탁방지과정이 전년도에 비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금융회사의 교육지원 요청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이 직접 출강하기도 하였다.

【 연도별 금융회사 연수원 교육실적 】

(단위 : 회수)

	금 융 연수원	보 험 연수원	금 융 연수원	상 호 저 축 은 행 연수원	새 마을 금 고 연수원	농 협 연수원	수 협 연수원	기 타	계
'02년	11	5	7	3	1		1	2	30
'03년	7	4	8	4	5			2	30
'04년	9	4	9	4	6	3	1	6	42
'05년	3	5	1	5	4	11	5	10	44
'06년	3	12			3	7	5	21	51
'07년	6	6		2	5	9	5	35	68
계	39	36	25	18	24	30	17	76	265



또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이 비교적 취약한 비은행권의 보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보다 질 높은 혐의거래보고를 위해 은행권 교육도 병행하였다. 비은행권은 규모가 큰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은행권은 전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4개 기관을 제외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 순회교육 실시실적 】

구 분	대상기관	교육기간	실 적	비 고
은 행 권	하나 신한 외환 기업 시티 부산 제일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07. 1~'07.12	12회(2,288명)	
광역생활권	대구·춘천·인천 소재 전 금융회사	'07. 1~'07. 3	6회(1,000명)	
증권·보험권	전국 10개 생활권* 소재 전 금융회사	'07. 5~'07.12	13회(950명)	
상호저축은행	남부권·중부권 소재 저축은행	'07.10~'07.12	2회(180명)	

\* 서울/부산/대구·경북/인천/경기/호남권/충청권/울산·경남/강원/제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고객인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다. 특히 많은 고객들이 금융거래보고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올바른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2007년 3월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 유도를 위해 포스터(38,000부)와 리플릿(180,000부)을 제작·배포하였다. 특히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선포하고 일반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깨끗한(Clean) 자금, 투명한(Clear)거래, 신뢰받는(Credit) 금융시스템 등 3C를 콘셉트로 홍보 포스터와 만화·그래픽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금융회사 창구, 검사수탁기관, 법집행기관 등에 각각 35,000부씩 배포하였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MBN, KTV 등에 직접 출연하여 혐의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 제1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홍보실적 】

홍보수단	홍보내용	비고
홍보포스터	‘홍보포스터 제작 및 금융회사, 법집행기관 등에 게시	
홍보브로셔	브로슈어를 제작 금융회사·법집행기관 창구, 6주년 행사장 비치	
플래카드	외부 : 주요 구청(중구2·서초1·종로1·영등포1) 지정 장소 게시	
	행사장 내부 : 2개(회의장 연단 벽면, 만찬장)	
KTV 방송	07.11.20(화) 15:00 특집프로그램 강지원의 ‘정책데이트’(투명한 거래, 자금세탁방지로 선진금융 이룬다)	11.21(수) 22:00방영
MBN 방송	07.11.22(목) 16:00 뉴스현장, 정운갑의 Q&A	생방송
세종로청사	행사 2주일 전부터 문자전송 영상물 가동	
언론기고	매경논단 1회, 국정브리핑 1회, 나라경제 1회	

## 2. 혐의거래보고의 품질향상 노력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 이후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는 월평균 보고건수가 20여건에 그치던 것이 '06년에는 2,000여건, '07년에는 4,000여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고건수의 증가에 비해 보고정보의 질적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심사분석자들이 1~10점으로 부여하는 「혐의거래보고 충실도」평가에서 2006년의 평균이 5.74점에 불과하였다. 이는 실제로 심사분석자가 상세분석을 한 보고건의 평점이므로 전체 혐의거래보고건의 충실도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혐의거래보고 품질의 개선이 시급한 것이다.

협의거래 보고의 품질이 낮은 것은 혐의거래 미보고를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부과 등 문책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회피성 보고가 많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금융회사 종사자가 혐의거래 여부를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보다 구체화된 혐의거래 유형 및 보고 사례를 수록하고 유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기존의 「혐의거래 참고유형」을 보완하여 각 금융회사에 제공하였다. 또한 금융회사 종사자들에게 혐의거래 보고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금융회사의 혐의거래보고서 중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선정·소개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연차보고서, 혐의거래 참고유형, 자금세탁 동향, 주요 통계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혐의거래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2007년말 조사한 혐의거래보고 충실도는 2006년의 5.74보다 다소 개선된 6.12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효율적인 심사분석을 위해서는 혐의거래보고의 충실도를 더욱 높여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각 금융회사별로 혐의거래보고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검사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3.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과 같은 자금세탁방지업무(혐의거래 등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에 대해 감독·검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부여하면서, 이 중 검사권의 경우 개별 감독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환전영업자를 감독하는 한국은행, 우체국에 대한 감독기관인 정보통신부와 같은 감독기관에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검사권을 매년 위탁하고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검사권을 위탁한 경우에도 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검사권을 위탁받은 검사수탁기관은 검사계획과 검사실시 및 조치결과를 매분기별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중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일반적인 제재는 검사수탁기관이 직접 조치하고, 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07년도에 검사수탁기관은 1,871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신제도(CTR, CDD)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제도에 대하여 안내 및 지도함과 함께 혐의거래 미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발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내부보고체계·교육연수 등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문책·주의·현지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완토록 하였다.

## 【 연도별 검사수탁기관별 검사실시 내역 】

(단위 : 기관수)

	정통부*	한은	금감원	농협	수협	산림	신협	금고	기타**	계
대상기관 (영업점)	1 (2,729)	1,018	457	1,199	92	144	1,013	1,552	152	8,356
'02년	1(18)	115	93	756	23	132	575	236	11	1,959
'03년	1(77)	53	90	691	35	74	665	486	8	2,179
'04년	1(61)	69	91	630	43	28	267	552	0	1,741
'05년	1(241)	64	47	695	41	144	180	423	0	1,835
'06년	1(283)	54	42	613	50	144	201	442	115	1,944
'07년	1(230)	32	35	609	49	144	207	480	85	1,871

\* 정통부의 검사기관 수 : 영업점(우체국) 기준

\*\* 기타 : 산자부(CRC), 중기청(창투사) 등

검사결과 대부분의 검사수탁기관은 대상기관이 내부보고체계 미흡, 업무지침 부실 및 자체교육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고, 검사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위주로 조치하고 있으나, 문책 또는 과태료 부과외와 같은 조치는 금융감독원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 【 금감원 연도별 검사결과 조치사항 】

	문책	조치의뢰	시정	주의	경영유의	현지주의	현지시정	합계
02년						1건	1건	2건
03년	1건		3건		2건	2건	1건	9건
04년			2건	7건	1건	3건		13건
05년		1건	1건	2건				4건
06년		1건				3건		4건
07년	1건	1건		2건	1건	2건		7건
합계	2건	3건	6건	11건	4건	11건	2건	39건

##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

연 도	부 과 현 황				위반사유	비 고
	권 역	기관수	건 수	총 부과금액		
2004	증권	1	2	200만원	협의거래	
	은행	3	14	1,550만원	미보고	
2005	은행	3	5	2,500만원	"	
2006	증권	1	1	300만원	"	
2007	은행	1	1	200만원	"	
계		9	23	4,750만원		

## 과태료 부과 절차(시행령 제16조)

- **과태료 부과대상** : 금감원 FIU에 통보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심의  
 →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10일이상) → **과태료 부과**  
 → 해당금융회사에 통보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신제도(CTR, CDD)의 원활한 정착과 보고제도 이행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수탁기관의 검사를 지원하거나 소규모 기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및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 연도별 FIU 감사지원 및 점검 실적 】

	대 상 기 관	인 원
' 02년 (4개 기관)	한투증권, 제이원상호저축은행, 우리은행, SK생명	4명
' 03년 (4개 기관)	외환은행, 신한은행, 동부증권, 대한생명	7명
' 04년 (7개 기관)	삼성생명, 농협중앙회, 새오산신협, 안산화량신협, 대구달구벌신협, 속초새마을금고, 인천송의새마을금고	14명
' 05년 (10개 기관)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한국증권, 교보생명, LG화재, 광 명새마을금고, 신길신협, 북부농협, 영동농협, 성남농협	20명
' 06년 (6개 기관)	SC제일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대한투자증권	18명
' 07년 (8개 기관)	전북은행, 경남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제일상호 저축은행, 도림신협, 성남중앙신협, 의왕새마을금고, 서울관악농협	24명

### 검사결과 혐의거래 미보고 사례

- D증권사 위반사례 : 차명계좌운용, 주식실물대량입출고, 대리인에 의한 입출금 및 매매주문 등 (200만원 과태료부과)
  - A지점 투자상담사 L은 지인인 Y의 소개로 유치한 K 명의 계좌에 00.MM.D 및 MM.D 동안 T(주)의 과장 B가 S사 주식 20만주를 실물로 입고하고, 은행이체를 통하여 △억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00.MM.D 자신의 방에 설치된 고객용 주문단말기를 통하여 Y가 S사 주식 △△만주를 분할 고가매수 주문하여 거액(△△.△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자신의 관리계좌에서 타인 명의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회사의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C는 동 미수금 발생직후 실시한 자체조사 과정에서 동 계좌가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였으나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 동 증권사 P 지점장 E는 00.M.D~0△.M.D. 기간중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 입출금, 입출고, 매매주문 및 계좌폐쇄가 이루어진 G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십수회에 걸쳐 입출금(입금 △△.△억원, 출금 △△.△억원)되었고 대량의 주식이 수회에 걸쳐 실물로 입출고(입고 000,000주, 출고 000,000주)되었으며, 0△.M.DD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당권리를 포기하면서 계좌를 폐쇄시킨 후 0△.M.D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A은행 위반사례 : 증여성 해외송금 (100만원 과태료부과)
  - K지점에서는 00.M.D L의 1건 △△△천미달러를 해외송금하면서 동 자금이 해외예금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송금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증여성 송금으로 대외 송금하였으며, 동 거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거래사실(자금출처 및 용도)의 확인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B지점에서는 00.MM.DD Y의 1건 △△천 미달러를 해외 송금하면서 동 자금이 해외예금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송금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증여성개인송금으로 대외 송금 하였으며, 동 거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거래사실(자금출처 및 용도 등)의 확인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또한 동지점에서는 00.MM.D~0△.M.DD 기간 중 G의 △△명의 △△건 △,△△△천미달러 상당의 외화를 해외투자 이민을 위한 자금으로 해외송금시 해당 국가에서 투자자금이 입금되어야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송금인의 요청으로 해외이주비 지급관련 증빙서류의 제시 없이 증여성개인송금으로 지급하면서 상기 송금건 중 △△건 △,△△△천미달러 상당은 혐의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였으나 상기 송금건 중 △건 △,△△△천 미달러 상당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내용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음.

□ B은행 위반사례 : 귀금속상가 주변 고액현금거래 (500만원 과태료부과)

- 위 은행은 00.M.D~00.M.D. J지점, S지점 등 6개 지점에서 예금주 K등에 대하여 총 △△△회에 걸쳐 합계 △,△△△억원의 예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위 금액이 1회 최소 △억원, 최대 △△억원씩 현금으로 출금되는 과정에서, 예금주들로부터 귀금속거래에 필요한 현금인출이라는 설명만 듣고 본점 준법지원실 등의 내부검토 없이 위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바,

위 거래는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발행 등과 같이 간편하고 안전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에 의하여 입·출금이 빈번히 일어난 거래이므로,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등의 목적으로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음



## 제 3 편

### 2007년 금융거래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제 1 장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제 2 장 금융거래정보의 분석 및 제공

제 3 장 적발된 자금세탁의 주요사례



## 제 1 장 금융거래정보의 수집

### 1. 혐의거래보고의 수집

#### 가. 혐의거래보고 건수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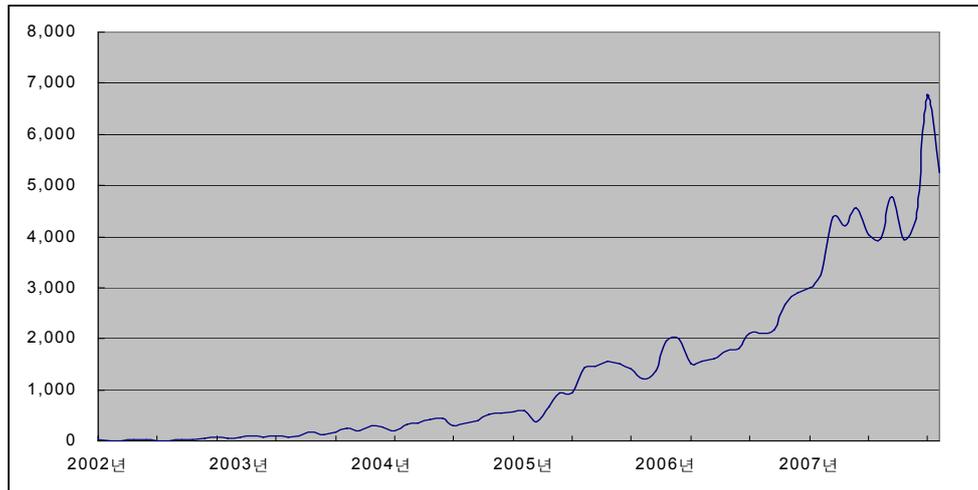
FIU 설립 이후 2007년 말까지 총 96,788건의 혐의거래보고가 접수되었다. 2002년 275건을 시작으로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2005년 13,459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6년에는 24,149건, 그리고 2007년에는 52,481건의 혐의거래보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2006년의 24,149건에 비하여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월 평균 4,373건이 접수된 것이다.

<표 3-1> 【 월별 혐의거래보고 접수 건수 】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2	16	11	11	14	13	11	8	15	21	38	64	53
2003	74	92	75	105	77	94	184	133	162	247	195	306
2004	270	203	318	356	411	442	305	337	403	508	550	577
2005	602	370	674	937	941	1,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2006	1,945	2,014	1,513	1,533	1,610	1,751	1,813	2,094	2,114	2,180	2,667	2,895
2007	3,009	3,245	4,378	4,215	4,566	4,033	3,956	4,776	3,945	4,347	6,769	5,242

<그림 3-1> 【 혐의거래보고의 월별 접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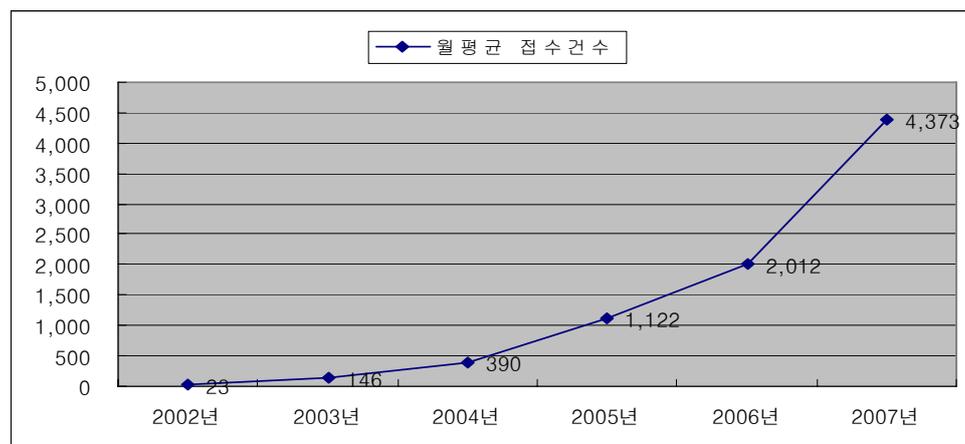
(단위 : 건)



<표 3-2> 【 월 평균 접수건수의 변화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월 평균 접수 건수	23	146	390	1,122	2,012	4,373

<그림 3-2> 【 월 평균 접수건수 추이 】



협의거래보고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협의거래에 대한 내부보고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의무적으로 보고된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의거래보고 관행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보고기관별 협의거래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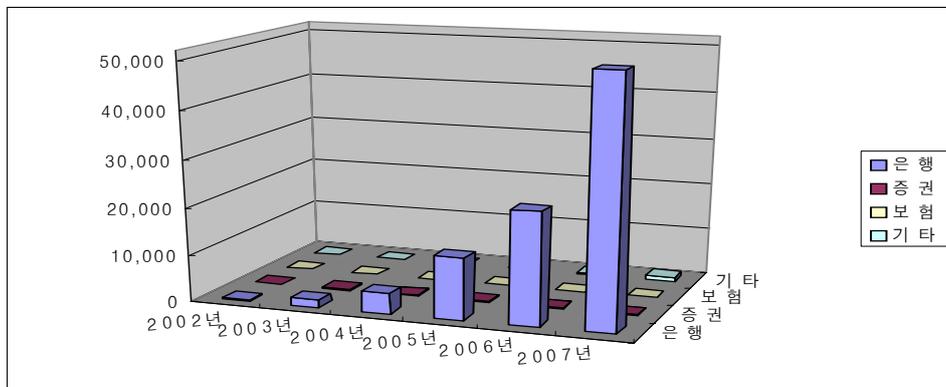
한편, 협의거래보고 내역 현황을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권이 보고량이 가장 많았으며, 증권·보험권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007년 협의거래보고 실적 전체 52,481건 중 51,337건이 은행으로부터 보고되었으며, 전체 협의거래 보고 실적의 97%를 차지하였다.

<표 3-3> 【 보고기관별 혐의거래보고 건수 변화 】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기 타	합 계
2002	243	30	0	2	275
2003	1,623	101	6	14	1,744
2004	4,380	225	9	66	4,680
2005	12,941	260	51	207	13,459
2006	23,522	199	58	370	24,149
2007	51,337	218	56	870	52,481
합 계	94,046	1,033	180	1,529	96,788

\* 기타 :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그림 3-3> 【 보고기관별 혐의거래 접수건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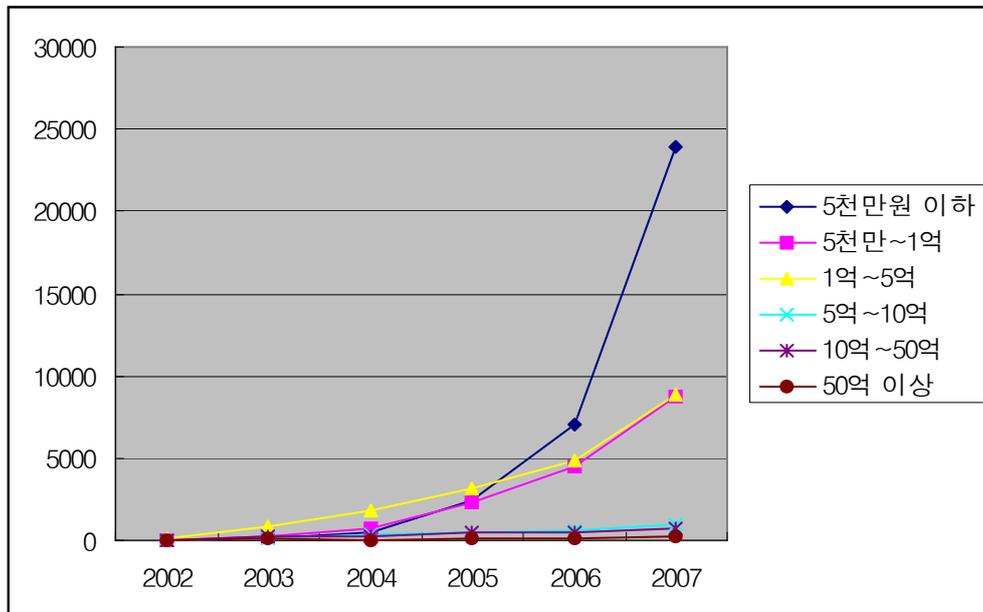
#### 다. 통화 유형별 혐의거래보고

통화유형별로 혐의거래보고를 살펴보면, 2007년 보고된 혐의거래 총 52,481건 가운데 원화로만 이루어진 혐의거래보고는 43,373건, 외화로만 이루어진 혐의거래보고는 9,841건, 원화와 외화가 결합되어 있는 혐의거래보고는 1,613건, 그리고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혐의거래보고가 792건이었다. 원화 거래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거래가 전체 거래건수 중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화거래 역시 10만 불(USD) 미만이 전체거래의 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원화 및 외화 등 거래 통화유형별 및 거래금액별 혐의거래보고 건수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4> 【 원 화 거 래 】

연 도	5천만 미만	5천만~1억	1억~5억	5억~10억	10억~50억	50억 이상	합 계
2002	3	26	101	43	40	18	231
2003	79	250	800	180	188	121	1,618
2004	474	723	1,841	352	289	96	3,775
2005	2,455	2,270	3,187	470	476	126	8,984
2006	7,052	4,449	4,849	651	544	123	17,668
2007	23,912	8,737	8,845	943	741	195	43,373
합 계	33,975	16,458	19,627	2,640	2,281	680	75,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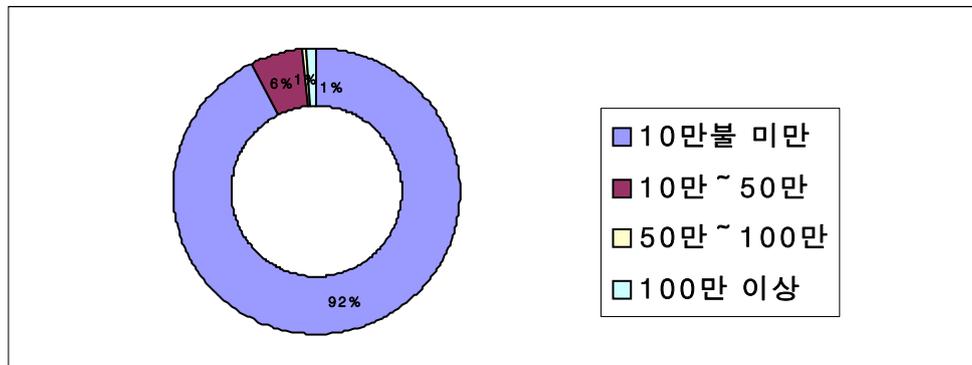
<그림 3-4> 【 원화 거래 추이 】



&lt;표 3-5&gt; 【 외화 거래(USD기준) 】

연 도	5만불 미만	5만~10만	10만~50만	50만~100만	100만~500만	500만 이상	합 계
2002	4	3	6	2	3	4	22
2003	42	45	130	8	8	1	234
2004	245	172	326	52	15	4	814
2005	3,168	751	464	32	34	36	4,485
2006	4,966	987	500	42	22	29	6,546
2007	7,957	1,135	581	56	47	65	9,841
합 계	16,383	3,093	2,007	192	129	139	21,943

&lt;그림 3-5&gt; 【 2007년도 외화 금액별 혐의거래보고 비중 】



## 2. 외환거래자료 및 지급수단수출입 자료의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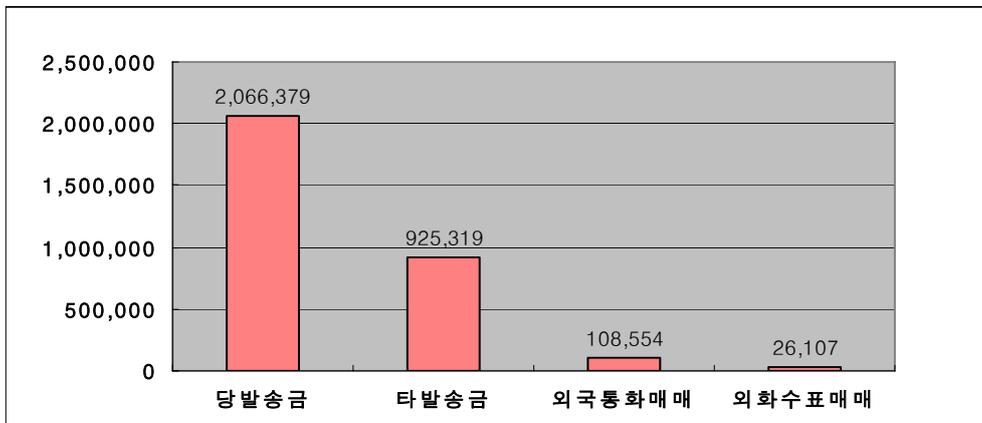
금융회사의 외환거래는 한국은행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으로부터 필요한 외환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받고 있는 외환거래 자료는 외환송금자료, 외국통화 매매 및 외화수표 매매 자료 등 15종이다.

&lt;표 3-6&gt; 【 2007년 주요 외환거래자료 수집현황 】

구 분	당발송금	타발송금	외국통화 매매	외화수표 매매
기준금액	1만불 초과	2만불 초과	1만불 초과	1만불 초과
건 수	2,066,379	925,319	108,554	26,597

2007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집한 주요 외환거래자료는 312만 여건이며 이중 송금자료가 299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송금자료중 당발송금, 즉 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하는 건수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lt;그림 3-6&gt; 【 2007년 주요 외환거래자료 수집현황 】



금융정보분석원은 외환거래자료 이외에 관세청으로부터 지급수단수출입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수단(화폐, 금 등)을 휴대하여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신고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지급수단수출입 자료는 반출과 반입을 합쳐 연간 44,000건 내외이며 외화휴대 반입자료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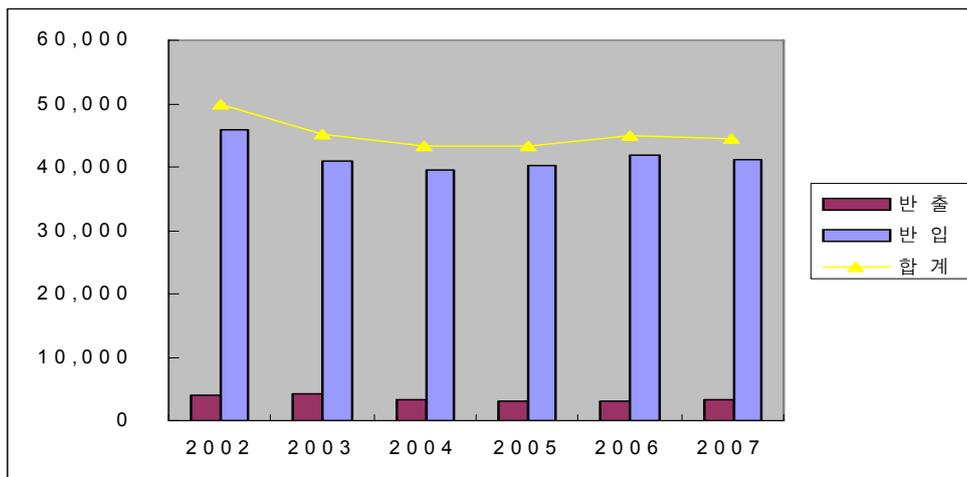
<표 3-7> 【 지급수단수출입 자료 변화 】

(단위 : 건)

구 분	반입 신고	반출 신고	합 계
2002*	50,266	4,140	54,406
2003	40,920	4,222	45,142
2004	39,952	3,347	43,299
2005	40,276	3,100	43,376
2006	41,851	3,023	44,874
2007	41,069	3,333	44,402
합 계	254,334	21,165	275,499

\* 2002년 건수에는 2001년 12월의 건수가 포함됨

<그림 3-7> 【 지급수단수출입 자료 변화 】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부터 수집된 외환거래 자료, 지급수단수출입 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상에 누적 관리되어,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거래정보 분석의 보조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략적 심사분석시 혐의거래자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 제2장 금융거래정보의 분석 및 제공

### 1. 혐의거래보고의 분석 및 제공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후 2007년 말까지 총 95,620건(기초분석 70,174건, 상세분석 25,446건)의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심사분석을 완료하였다. 이 가운데 7,928건의 혐의거래보고 및 관련 분석정보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 등 6개 기관)에 제공하였다.

연도별·기관별 제공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8> 【 법집행기관별 정보제공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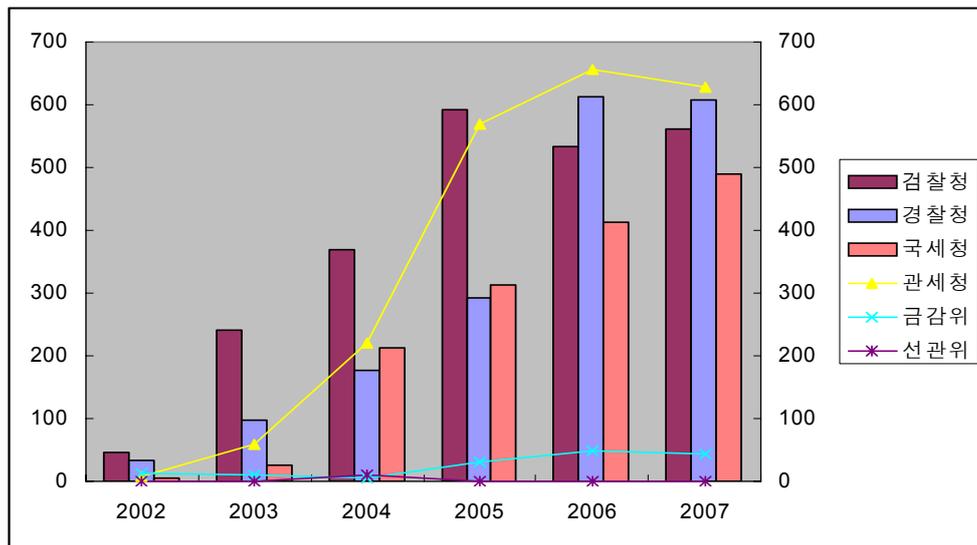
연 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선관위	합 계
2002	45	34	6	7	12	0	104
2003	241	98	25	58	10	0	432
2004	369	176	214	221	5	10	995
2005	593	292	313	570	31	0	1,799
2006	534	612	413	657	50	1	2,267
2007	561	607	490	629	44	0	2,331
합 계	2,343	1,819	1,461	2,142	152	11	7,928*

\* 기관간 중복제공 739건

2007년 중 정보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관세청에 제공한 건이 가장 많으며, 이어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금감위, 선관위 순이다.

금융회사의 혐의거래보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법집행기관에의 정보제공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 법집행기관별 정보제공 변화 】



법집행기관에 제공한건 중 수사·조사가 종결된 건은 4,181건이며, 이 중 자금세탁혐의가 발견되어 기소, 고발, 추징 등 조치된 건수는 1,727건으로 조치율이 41.3%에 이른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조치율이 7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에 제공되는 정보는 전제범죄 중 조세부정환급이기 때문이다. 조세부정환급 범죄는 자금세탁의 유형이 비교적 전형적이거나 실지조사 없이 금융정보 및 행정정보 분석만으로도 그 혐의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lt;표 3-9&gt;

## 【 범집행기관별 처리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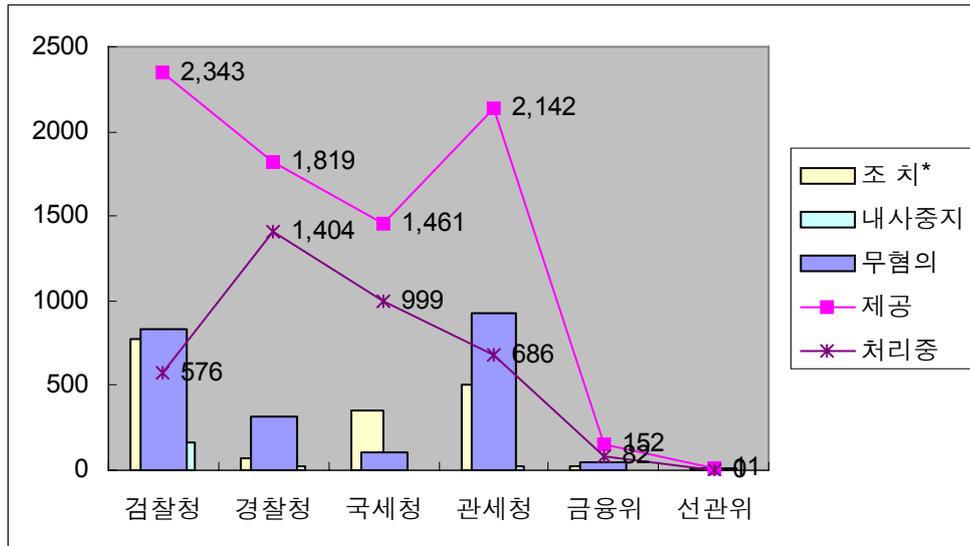
(단위 : 건)

기 관	제 공	종 결				처리중
		계	조 치*	무혐의	내사중지	
검찰청	2,343	1,767	772	836	159	576
경찰청	1,819	415	73	313	29	1,404
국세청	1,461	462	351	111	-	999
관세청	2,142	1,456	503	933	20	686
금융위	152	70	27	43	-	82
선관위	11	11	1	10	-	0
계	7,928	4,181	1,727	2,246	208	3,747

\* 조치내용: 기소(검찰), 기소의견 송치(경찰), 통고처분 또는 고발(국세청), 고발 또는 기관경고(금융위) 등

&lt;그림 3-9&gt;

## 【 범집행기관별 처리 현황 】



## 2. 전략적 심사분석의 실시 및 정보제공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의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혐의거래를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전략적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혐의거래 추출에는 외환거래자료, 지급수단수출입자료, 신용불량정보 등 입수하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현재 전략적 심사분석에는 혐의거래정보의 기초분석에 사용되는 룰베이스(rule base)와 스코어링(scoring)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전략적 분석에서의 룰 시스템은 과거 혐의거래정보의 제공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자금세탁의 혐의 패턴이나 유사성을 추론·분석하는 방식인 반면, 스코어링 시스템은 혐의거래보고 항목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개발된 개별 변수들의 혐의성을 산정한 후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수치로 표현하는 모델이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이후 2007년 말까지 전략적 심사분석을 통해 총 427건의 혐의거래를 추출하였으며, 60건의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총 63건의 혐의거래를 추출하여 각각의 거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중 17건의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였다.

## 3. 국내 법집행기관 및 외국 FIU로부터의 정보제공요구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정보에 대한 분석 또는 전략적 심사분석을 통해 혐의성이 포착된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해주는 외에 국내 법집행기관이나 외국 FIU로부터 정보제공을 요구 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FIU 설립 이후 2007년 말까지 국내 법집행기관과 외국FIU로부터 각각 198건과 157건의 정보제공요구를 요청받아 처리하였다. 2007년도에는 국내 법집행기관과 외국 FIU로부터 각각 86건과 18건의 정보제공을 요청받아 처리하였다.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가 2005년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77건, 86건으로 요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6년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시행으로 고액현금거래 DB가 구축되고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금융거래정보의 질과 양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기대와 신뢰성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법집행기관의 정보제공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 3 장 적발된 자금세탁의 주요사례

### 1. 특정금융거래정보 처리결과의 피드백 및 이의 활용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의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처리결과 통보서로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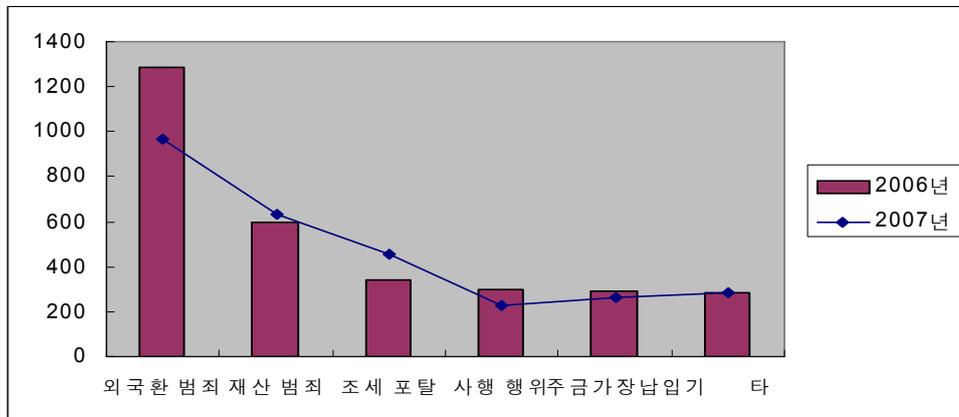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이러한 피드백을 분석하여 분석기법 개발에 활용하고, KoFIS 시스템상 룰 및 스코어링 결정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1회 개최되는 심사분석자 회의 시 케이스 스터디 자료로 이용하고, 사례집도 발간하는 등 분석자의 분석능력 향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심사분석 사례집은 내부 직원들 뿐 아니라 각 법 집행기관의 해당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2007년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적발된 사례를 보면 외국환 범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기, 횡령, 배임, 조세포탈 순이다.

<표 3-10> 【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적발된 범죄유형 】 (단위: 건)

범죄유형	2006년		2007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외국환 범죄(무등록외국환업무 등) <sup>8)</sup>	1,283	41%	963	34%
재산 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sup>9)</sup>	599	19%	635	22%
조세 포탈(조세부정환급 등) <sup>10)</sup>	341	11%	454	16%
사행 행위(게임몰이용상습도박 등) <sup>11)</sup>	298	10%	224	8%
주금가장납입(공정증서 부실기재 등) <sup>12)</sup>	292	10%	266	10%
기 타 <sup>13)</sup>	285	9%	287	10%
총 계	3,098	100%	2,829	100%

※ 복수제공건 포함 (순 건수는 2006년 2,267건, 2007년 2,331건임)



- 8) 밀수출입(관세법위반), 수출입가격 조작, 재산 국외도피, 관세포탈 순
- 9) 대부분 사기·횡령·배임('07년 539건)임
- 10) 5억원 이상 조세 부정환급
- 11) 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12)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부실기재 공정증서 행사
- 1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신용카드 매출전표 허위작성, 증권거래관련 범죄, 뇌물·금품수수 등

## 2. 주요 자금세탁 적발 사례

첫 번째 사례는 건설업체대표의 불법대출 사례이다. 사업 및 취업 이력으로 보아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운영할 자금력이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혐의자가 (주)○○저축은행 주식의 95%를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실적이 없는 건설업체 등과 거액의 자금거래를 하는 점 등에 의심이 있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 금융회사 보고내용

○○은행의 (주)B건설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하여 최○○ 계좌에 16억원, 양○○ 계좌에 30억원, 수취인 불명의 ○○은행 계좌에 10억원을 각 입금하고, 당일 임○○가 위 양○○ 계좌에서 20억원을 현금 인출하여 이중 10억원을 황○○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양○○가 (주)F개발에서 본인계좌로 입금한 20억원을 인출하여 18억원은 (주)B건설을, 2억원은 (주)G개발을 송금의뢰인으로 하여 (주)○○저축은행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며칠 후 김○○가 (주)J건설 계좌에서 4,400만원을 인출하여 (주)K홀딩스 명의로 (주)○○저축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 □ 심사분석 내용

관련 법인의 재무제표, 외부감사보고서, 아파트분양정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아파트 분양가에 의하여 환산한 분양예상금액과 회사가 계상한 수입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위 차액으로 아파트 건설 시행사를 하면서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주)○○저축은행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이 저축은행의 자금을 이용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혐의가 있었다.

또한 (주)M건설, (주)M산업개발의 감사보고서, 주주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송○○는 이들 법인 이외에도 다수의 건설업체를 타인 명의로 인수 또는 신설 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자금을

대여한 법인들의 자산, 자본금, 사업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자금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주)M건설과 (주)M산업개발이 계상한 부채는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유출하면서 부채를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었다.

#### □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송○○는 경남, 대전 등지의 아파트 및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저축은행으로부터 313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동 대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주)○○저축은행 임직원인 정○○ 등에게 1억원을 송금하여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주)○○저축은행 임직원 이○○는 공모하여, 위 송○○가 (주)M개발을 설립하여 아파트 설립건에 대하여 대출을 부탁하자,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36억2,0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176억5,000만원 상당을 대출하여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기에 뇌물공여/수수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다.

다음 사례는 유류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건이다. 유류 도소매업의 경우 유류의 실제 거래 여부를 사후에 사실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공제)받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담도 낮추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실물거래의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거래를 수반하여 거래를 위장하고 있다.

#### □ 금융회사 보고내용

(주)○○에너지는 A은행 계좌에 (주)○○물산으로부터 5억원을 송금받아 1회 2,000만원 미만의 현금으로 총 30회에 걸쳐 전액을 인출하고, 또한 B은행 계좌에 (주)○○물산 서울경기지점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여러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 심사분석 내용

(주)○○에너지는 2001년 유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매출액 75억원 규모의 법인으로 2007년 현재 폐업한 업체였다. 동 법인의 대표이사 노○○는 2억원의 국세체납과 7건의 채무불이행 사실, 도박 등 7회의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동 혐의거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주)○○물산이 세금을 부당환급(공제)받기 위하여 (주)○○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 지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주)○○에너지의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동 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물산 계좌로 송금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동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였다.

#### □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국세청 조사결과 (주)○○에너지는 실제로는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것으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동 사례와 같이 사업영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간에 특정 거래자와 입출금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허위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위조상품 밀수입을 통한 대금을 밀반출한 사례이다. 불법 환전인들은 환전자금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전액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자의 출입국 내역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관련 전과 조회, 해당 사업체의 수출입품목 및 수출실적 등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당·타발 상세분석을 통한 차이점을 도출하고, 송금수취인에 대해서도 송금인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송금 및 환전 명의인들의 직장관계나 재산상황 등도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 금융회사 보고내용

백○○, 서○○ 등 총 34명이 경기도 평촌 일대 은행에서 소지 목적으로 환전한다고 하면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69회에 걸쳐 미화 총 \$6,686,000 (한화 약 65억원 상당)로 환전하였다.

#### ◎ 심사분석 내용

백○○는 경기도 안산에서 도장업을 운영하고, 서○○는 광고 판촉물 소매업을 하는 자로, 중국에 각각 연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과 4개월간의 총 외화환전 규모가 한화 65억원 상당에 이르고, 건당 평균 1억원을 환전하는 등 국외 재산도피, 밀수출입 및 수출입가격조작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였다.

#### ◎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백○○와 서○○는 국내에서 중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보따리상, 환치기계좌운영주, 수출입업체 등)과 공모, 원화 90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주변 지인 44명을 동원하여 J은행 등 4개 은행에서 업무상 여행경비인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 102회에 걸쳐 미화 \$8.7백만불 상당을 불법환전한 후 밀반출한 사실과, W은행 등 7계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총 10억원 이상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입된 가짜 로렉스시계 236점 외 22종 965점 정품시가 154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음이 추가로 확인되어 전원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 3. 금융회사의 제공정보에 대한 Feed back 관리 강화

협약거래 보고의 월 평균 접수건수가 2007년에 처음으로 4천 건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협약거래보고의 양적 확대보다는 보고의 품질 향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협약거래정보의 내용이 충실할수록 금융정보분석원 분석자들의 심사분석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법집행기관에 보다 유용한 분석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협약거래보고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각 금융회사가 보고한 협약거래정보의 처리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 피드백이 아닌 매년 심사분석사례집 발간 및 통계자료 제공 등을 통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금융회사의 협약거래보고시 참고하도록 하여 보고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 제 4 편

### 2008년도 주요 추진과제와 발전방향

제 1 장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제 2 장 FIU 정보시스템의 발전

제 3 장 국제협력 강화

제 4 장 금융회사와의 협조체제 강화

제 5 장 심사분석 역량 강화



## 제 1 장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 1.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하위규정 제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 발효될 예정이다. 동 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하위규정인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내용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가.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허가범위 및 절차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 법인 및 단체와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며,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금융거래 제한 관련 이의신청 절차 규정

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서면신청, 7일 이내 결정·통지 등을 할 수 있다. 유사 입법 제도는 이의신청에 관한 통상적 절차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등이 있다.

#### 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6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8조 등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위반사항 조사·확인후 통지, 의견진술 종료후 징수, 과태료 금액결정(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 등의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하위규정 개정

금융정보분석원은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이다.

### (1) 혐의거래보고

카지노사업자의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은 현행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인 건당 2천만원(외화 1만불)으로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카지노사업자는 금년 12월 22일부터 건당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칩·현금·수표 교환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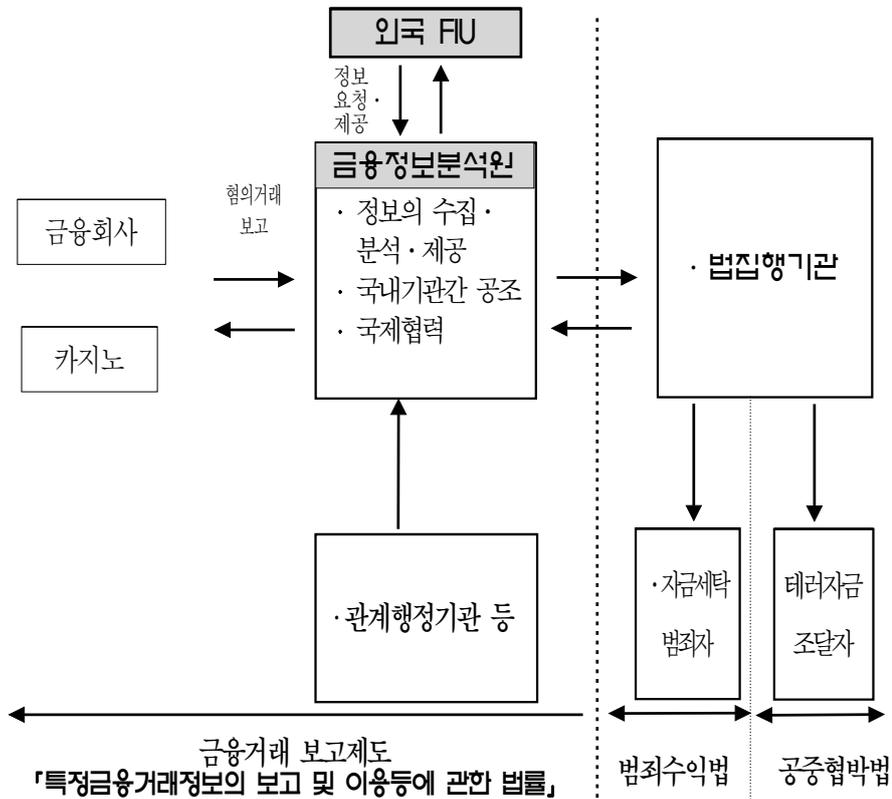
### (2) 고액현금거래보고

카지노사업자는 금융회사와 달리 칩 교환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고객 확인제도

카지노의 경우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며,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주체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억제 체계도 】



## 제 2 장 FIU정보시스템의 발전

### 1. 금융회사의 AML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금융회사의 자체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은행·증권 등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동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4개 업권별(은행, 증권, 보험, 카지노)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07년에 은행권 공동 작업반을 통해 작성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배포하여 각 업권에 맞는 개별 지침을 새롭게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계분석 표준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는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에서는 업권별 자금세탁업무 공통 지침을 기초로 내부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는 경영진의 책임과 독립적인 감사를 포함하여 내부통제 절차가 명시되며, 직원알기제도(Know your employee), 고객신원확인 절차에 대한 정책이 명시될 것이다.

또한 고위험 고객 및 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신원확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신원확인 절차에 대한 업무재설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위험 고객·거래·상품·서비스에 대한 분류 및 평가, 관리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상거래분석, 패턴분석, 연계분석, 롤·스코어링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과 관련된 이상거래를 발견

하여 분석 후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FIU에 보고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융회사의 자체 분석능력이 강화되면 STR의 보고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2. 보고기관 교육·감독 지원 및 유형별 분석 시스템 구축

### (1) 보고기관 AML 교육·감독 지원 시스템 구축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리 프로세스를 전산화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독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혐의거래보고 대상기관이 많은 관계로 FIU의 제한된 인원으로 개별 보고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수준 측정, 검사·감독, 수준별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보고한 STR에 대한 피드백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가 자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FIU의 분석결과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추진할 교육·감독 지원은 우선 보고기관의 ‘일반 현황, 보고현황, STR 분석결과, 법집행처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효율적인 평가지표 개발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아울러 혐의거래 보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금융회사 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교육과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혐의거래 모의보고 훈련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감독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금세탁방지

업무이행이 미흡한 기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중 교육으로 자금세탁방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2) 심사분석자별 혐의유형 관리·분석 시스템 구축

2007년말 기준으로 STR 보고는 월 5~6천건 수준이며, 그중 10% 정도만 기초분석 단계를 거쳐 상세분석되고 나머지는 보존처리 되고 있다. 따라서 보존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보존건에 대해 각 유형별로 자동분류하면 담당자가 이를 점검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혐의성 높으나 미처 확인되지 못한 STR에 대해 이중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배당된 보존 건에 대해 연계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도 개발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은 FIU정보시스템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맵을 구축한 후, 이를 필터링하고 정렬·검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급격히 증가하는 STR 보고의 90%이상 차지하는 보존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3) 통합 보안관리 및 백업시스템 구축

FIU정보시스템에는 금융회사에서 보고한 STR, CTR, 행정자료 및 심사분석결과, 법집행기관 처리결과 등 중요한 자료가 분산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법해킹, 또는 각종 유해 요소로부터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 등의 손상을 막고, 피해 발생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제 3 장 국제협력 강화

### 1. FATF 가입 추진

금융정보분석원은 2008년 중 FATF 상호평가를 거쳐 2009년 중 정회원 가입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하에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FATF 상호평가는 평가대상국 외의 회원국이 평가자를 파견하여 이루어지며, 권고사항에 상응하는 제도도입 뿐만 아니라 2주간에 걸친 방문실사(on-site visit) 기간 동안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 면담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질적 이행여부를 상세하게 점검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호평가 수검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보고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우리의 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FATF 정회원 가입기준에 따르면 6개 핵심권고사항<sup>14)</sup>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완전이행(Compliant)’ 혹은 ‘대부분 이행(Largely Compliant)’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가입후 3년내 ‘대부분 이행’ 등급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2007년에는 정회원 가입기준을 강화하여 가입심사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상기 6개 핵심권고사항 외에 자산 동결·몰수, 국제협력, 금융감독 관련 항목<sup>15)</sup>

14) R1 자금세탁의 범죄화, R5 고객확인 의무, R10 기록보존, R13 혐의거래보고, SR2 테러자금조달의 범죄화, SR4 테러자금조달 관련 혐의거래보고

15) 자산 동결·몰수(R3, SR3), 국제협력(R35, R36, R40, SR1, SR5), 금융감독(R23)

들을 추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기준은 2008년 상반기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6개 핵심권고사항은 주로 금융정보 분석원 소관 사항인 반면 새로이 추가될 항목들의 경우에는 법무부, 법집행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한 항목들이어서 향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2007년 5월 구성된 「FATF 가입준비 관계기관 T/F」를 '09년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특히 '09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FATF 총회에는 T/F 구성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관 부분에 대한 심사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 Egmont Group 총회 개최

Egmont Group의 제16차 총회가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106개 회원국 금융정보분석기구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며, 에그몽 운영위원회 회의 (Egmont Committee Meeting), FIU 원장회의(Heads of FIU Meeting), 5개 실무그룹 회의(Working Group Meetings), 전문가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 정보를 강화하고 FIU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gmont Group 총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동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기구인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총회를 2004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한 데 이어 2008년 에그몽 그룹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8 에그몽 그룹 총회 주요 일정(참정) 】

	25(일)	26(월)	27(화)	28(수)	29(목)
오 전		실무 작업반 회의	FIU 원장 회의  원장의 참가자: 트레이닝 세미나	총회 계속	총회 계속
오 후	에그몽 위원회 (EC; Egmont Commitee) 회의	(5개 분과 동시 진행)	총회		FIU 원장 회의
사교행사		환영 리셉션		공식 만찬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중 FATF 상호평가 수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08년 5월 Egmont Group 총회 개최는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정책적 홍보와 외국 FIU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인바,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3. 외국 FIU와 정보교환 및 협력 확대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 이후 2007년 12월 현재까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 총 36개국 FIU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간 체결 대상국 선정에는 상대방 국내법상 정보교환을 위한 MOU 필요 여부, 자금세탁 위험성, 우리나라와의 거래규모 등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향후에도 외국 FIU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우리나라와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 및 동남아시아 지역 중 최근 FIU가 설립된 국가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gmont Group은 최근 ‘행동강령(Egmont Group Charter)’을 채택하고(2007년 5월) 각 회원국이 동 행동강령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Letter of Acknowledgment)’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동 행동강령에는 정보교환의 기본원칙, 정보요청의 절차 및 제공정보의 이용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교환 원칙과 관련하여 Egmont Group 회원국간에 일종의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이 추진하고 있는 MOU는 정보교환의 원칙을 양자간에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교류 등 정보교환 이외의 분야에서 협력증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주요국을 상대로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 4 장 금융회사와의 협조체제 강화

### 1. 교육내실화 및 비은행권에 대한 교육 강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되고, 혐의거래 보고가 활성화된 데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이후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힘입은 바 크다.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등으로 테러 자금조달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제도변경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정보 분석원은 금융회사등과의 상시 협조체제 구축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게 되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도 보고대상금액, 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혐의거래보고 및 내부통제 체제가 미흡한 지방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교재도 '08년 제도운영 방향, 자금세탁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수법, 혐의거래보고서 우수 사례 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실무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법률 제·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변화된 제도환경에 보다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개선

그 동안 검사업무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원활하게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왔다. 검사업무는 주로 검사수탁기관이 자체적인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의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수탁기관의 검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검사대상 기관은 많은 반면 검사담당 인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검사가 다소 형식적으로 실시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비록 검사권을 감사수탁기관에 위탁하였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한 위탁자로서 보다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감독권 행사등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검사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앞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검사가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하겠다.

### (1)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업무 내실화 유도

그 동안 검사수탁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는 검사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기관의 고유한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식적이고 수동적으로 실시된 측면이 없지 않다. 연평균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가 2,000

여가에 이르는 등 양적인 면에서는 양호하나, 검사체크리스트 활용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관성과 통일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보다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검사수탁기관에게 담당인력의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혐의거래보고실적 등이 저조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검사시 활용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좀 더 계량화·객관화하도록 하고, 검사매뉴얼이 없거나 내용이 미흡한 기관은 이를 마련하거나 수정·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 (2)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검사권한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매년 10개의 감독기관에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검사권을 위탁하고 있다. 매년 2,000여개에 달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실시 기관의 개별 검사결과를 검토하고 감독상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검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내실있는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검사수탁기관의 검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방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의 OJT형식의 교육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위탁할 때 형식적인 위탁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검사수탁기관이 분기별로

보고하는 검사결과서를 면밀하게 검토·분석한 후 그 결과를 검사수탁기관에 피드백해 주는 등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 (3) 검사지원과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자체 검사담당 인력부족과 금융회사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매년평균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검사지원이 은행과 같은 대형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소규모 기관의 제도 이행실태 파악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검사지원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 등 해당 검사수탁기관에 통보는 하고 있으나, 해당 금융회사의 시정여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은행 등 대형기관에 대한 검사지원과 지도점검에서 탈피하여 저축은행과 같은 소규모 기관에 대한 검사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상황 평가

자금세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혐의거래 보고등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각 금융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조사·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효과적 정착과 금융

회사의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08년에도 '07년도에 이어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으로 '07년에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분야(혐의 거래 충실도, 혐의거래보고건수 증가율, 법집행기관에의 제공률 등)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였으나, '08년에는 혐의거래보고 항목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체제 구축, 제도이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가급적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금융회사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이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4. 금융회사에 대한 피드백의 강화

FATF는 40+9 권고사항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금융회사와 특정 비금융기업 및 전문직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치와 혐의 거래보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을 확립하고 피드백 메커니즘(Feedback mechanism)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드백의 주요내용은 혐의거래보고 관련 통계, 제공 건의 법집행기관 처리결과, 자금세탁기법·방법·동향 및 유형, 실제 자금세탁 사례 등이다.

2001년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보고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혐의거래참고유형을 제공하는 등 제한적인 피드백만을 제공하여 왔다. 2005년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주요활동, 자금세탁사례, 통계수치 등을 담은 『FIU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금융회사에 배포하는 등 피드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한 혐의거래 통계, 자금세탁 국제동향 등 기존의 자료들을 책자배포, 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연차보고서, 혐의거래 참고유형 등 자금세탁 동향자료를 매년 발간하여 전체 보고기관에 배포하였다. 2006년말부터는 자료의 보안이 요구되는 심사분석 사례집 및 주요항목별 세부 STR 통계 등을 금융회사 전용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혐의거래보고의 질적 수준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 보고기관 자신들이 보고한 혐의거래 정보가 자금세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등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혐의거래보고 관련동향을 전달하고, 혐의보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소규모 금융회사, 환전영업자 등 의무이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보고기관에 대해서도 참고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원과 금융회사간의 정보채널을 KoFIU 포털로 일원화하여 단일화된 채널을 통해 전략적 심사 분석결과보고서, STR활동 검토서, 자금세탁기법과 제도 등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해결(권고)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보고담당자가 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STR, CTR, 법제도 등과 같이 주제별로 패키지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혐의거래건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법집행기관에의 제공여부, 기소 또는 처벌여부 등 처리결과를 부분적으로 보고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등 자금세탁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 제 5 장    심사분석 역량 강화

### 1. 전략적 심사분석의 활성화

금융정보분석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략적 심사분석을 통해 427건의 혐의거래를 추출하여 분석을 완료한 바 있다. 2006년 1월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전략적 심사분석의 활용 여지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07년부터는 양적인 증가와는 별도로 거래 유형별, 규모별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전략적 심사분석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룰(Rule) 및 스코어링(Scoring)에 기반한 통합연계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략분석 대상 자료의 추출기준이 고도화됨으로써 전략적 심사분석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자본거래, 외환파생거래, 무역거래의 외환거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며, 외환거래, CTR거래 등의 상시 위험 분석을 위한 룰과 스코어 등급을 이용한 전략적 심사분석체계를 운영하여 고위험 외환거래, 고위험 CTR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8년에도 지속적인 전략분석 고도화를 추진하여 보다 효과적인 추출기준과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전략분석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전략적 심사분석의 내실화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 2. 심사분석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분석처리능력의 확충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최근 혐의거래보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해진 인원과 시간의 제약 속에서 늘어난 혐의거래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심사분석 업무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의 해결방안 중 하나를 평균 심사분석기간 단축을 통해 전체 분석 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 분석역량의 지속적 강화와 행정자료 수집의 신속성 제고 및 심사분석 기간의 개인별 관리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심사분석자들이 분석 과정에서 요청한 각종 행정자료 수집의 신속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보조회 단말기 확보, 정보DB의 직접연결 등 정보의 수집시간의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분석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별분석자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실시하는 심사분석 사례발표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사분석 노하우를 공유토록 하고, 성공적인 심사분석 사례를 수록하는 심사분석 사례집을 갱신하는 한편, 지식관리 시스템 활용을 적극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개별 심사분석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도록 할 예정이다.



## 부 록

1. 자금세탁관련 주요통계
2. 금융정보분석원 주요 연혁
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법률
4. 에그몽 그룹 회원강령
5.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유엔안보리결의안  
금융조항의 이행을 위한 FATF지침



## 1. 자금세탁관련 주요통계

### 가. 혐의거래보고(STR)

#### (1) 혐의거래보고 접수 현황

【 월별 혐의거래보고 접수 건수 】

(단위 : 건)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16	11	11	14	13	11	8	15	21	38	64	53	275
2003	74	92	75	105	77	94	184	133	162	247	195	306	1,744
2004	270	203	318	356	411	442	305	337	403	508	550	577	4,680
2005	602	370	674	937	941	1,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13,459
2006	1,945	2,014	1,513	1,553	1,610	1,751	1,813	2,094	2,114	2,180	2,667	2,895	24,149
2007	3,009	3,245	4,378	4,215	4,566	4,033	3,956	4,776	3,945	4,347	6,769	5,242	52,481

\* 2002년 건수에는 2001년의 13건이 포함됨.

【 보고기관별 혐의거래보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은행	증권	보험	기 타	합 계
2002	243	30	0	2	275
2003	1,623	101	6	14	1,744
2004	4,380	225	9	66	4,680
2005	12,941	260	51	207	13,459
2006	23,522	199	58	370	24,149
2007	51,337	218	56	870	52,481
합 계	94,046 (97.2%)	1,033 (1.1%)	180 (0.2%)	1,529 (1.5%)	96,788 (100%)

## (2) 혐의거래보고 분석·제공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분석 건수	208	1,252	4,272	5,846	6,598	7,270	25,446
제공 건수	104 (7)	432 (55)	995 (191)	1,799 (345)	2,267 (113)	2,331 (28)	7,928 (739)

\* 분석건수는 상세분석건수를 의미함, ( )는 기관별 중복제공 건수

## (3) 법집행기관별 정보 제공 현황

(단위 : 건)

연 도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선관위	합 계
2002	45	34	6	7	12	0	104
2003	241	98	25	58	10	0	432
2004	369	176	214	221	5	10	995
2005	593	292	313	570	31	0	1,799
2006	534	612	413	657	50	1	2,267
2007	561	607	490	629	44	0	2,331
합 계	2,343	1,819	1,461	2,142	152	11	7,928

## (4) 법집행기관별 처리현황

(단위 : 건)

기 관	제 공	종 결				처리중
		계	조 치*	무혐의	내사중지	
검찰청	2,343	1,767	772	836	159	576
경찰청	1,819	415	73	313	29	1,404
국세청	1,461	462	351	111	-	999
관세청	2,142	1,456	503	933	20	686
금감위	152	70	27	43	-	82
선관위	11	11	1	10	-	0
계	7,928	4,181	1,727	2,246	208	3,747

\* 조치내용 : 기소(검찰), 기소의견 송치(경찰), 통고처분 또는 고발(국세청), 고발 기관 경고(금감위)등

## (5) 통화별 보고현황

## 【 혐의거래보고중 원화거래의 금액구간별 현황 】

(단위 : 건)

연 도	5천만 미만	5천만~ 1억	1억~ 5억	5억~ 10억	10억~ 50억	50억 이상	합 계
2002	0 (0.0)	3 (25.0)	4 (33.3)	1 (8.3)	3 (25.0)	1 (8.3)	12 (100.0)
2003	3 (1.3)	26 (11.3)	101 (43.7)	43 (18.6)	40 (17.3)	18 (7.8)	231 (100.0)
2004	79 (4.9)	250 (15.5)	800 (49.4)	180 (11.1)	188 (11.6)	121 (7.5)	1,618 (100.0)
2005	474 (12.6)	723 (19.2)	1,841 (48.8)	352 (9.3)	289 (7.7)	96 (2.5)	3,775 (100.0)
2006	2,455 (27.3)	2,270 (25.3)	3,187 (35.5)	470 (5.2)	476 (5.3)	126 (1.4)	8,984 (100.0)
2007	7,052 (39.9)	4,449 (25.2)	4,849 (27.4)	651 (3.7)	544 (3.1)	123 (0.7)	17,668 (100.0)
합 계	23,912 (55.1)	8,737 (20.1)	8,845 (20.4)	943 (2.2)	741 (1.7)	195 (0.5)	43,373 (100.0)

## 【 혐의거래보고중 외화거래의 금액구간별 현황 】

(단위 : 건)

연 도	5만불 미만	5만~ 10만	10만~ 50만	50만~ 100만	100만~ 500만	500만 이상	합 계
2001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2002	4 (18.2)	3 (13.6)	6 (27.3)	2 (9.1)	3 (13.6)	4 (18.2)	22 (100.0)
2003	42 (17.9)	45 (19.2)	130 (55.6)	8 (3.4)	8 (3.4)	1 (0.4)	234 (100.0)
2004	245 (30.1)	172 (21.1)	326 (40.0)	52 (6.4)	15 (1.8)	4 (0.5)	814 (100.0)
2005	3,168 (70.6)	751 (16.7)	464 (10.3)	32 (0.7)	34 (0.8)	36 (0.8)	4,485 (100.0)
2006	4,966 (75.9)	987 (15.1)	500 (7.6)	42 (0.6)	22 (0.3)	29 (0.4)	6,546 (100.0)
2007	7,957 (80.9)	1,135 (11.5)	581 (5.9)	56 (0.6)	47 (0.5)	65 (0.6)	9,841 (100.0)

## (6) 범죄수익\* 또는 불법수익\*\* 의 자금세탁 관련 사건처리 현황

구 분	자금세탁 등 관련 수사 건수	수사 건수 중 기소 건수	기소 건수 중 유죄판결 건수
2004	62	51	50
2005	81	71	40
2006	75	47	42
2007	120	71	55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불법수익

\*\*\* 유죄판결 건수에는 전년도 기소건수 중 해당년에 1심판결한 건도 포함

## (7) 범죄수익 또는 불법수익의 자금세탁 관련 몰수·추징 현황

구 분	자금세탁과 관련된 몰수추징 (건)	몰수·추징 금액 (백만원)
2004	11	36,762
2005	63	22,130
2006	26	10,593
2007	29	163,507

## (8) 자금세탁과 관련된 사법공조 현황(관련 자금의 몰수·추징 포함)

구 분	자금세탁과 관련한 사법공조 요청받은 (건)	요청에 대한 수락 (건)	요청의 처리에 소요된 기간*
2004	1	1	146일
2005	1	1	103일
2006	1	1	30일
2007	5	5	120일

\* 요청부터 수락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일수

## 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1) 금융권별 보고 현황

보고기관	은행	증권	보험	기타*	합계
건수(천건) (%)	5,826 (66.7)	93 (1.1)	0.5 (-)	2,814 (32.2)	8,733.5 (100)
금액(조원) (%)	143 (57.7)	18 (7.2)	0.1 (-)	87 (35.1)	248 (100.0)

\*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2) 보고건수 및 금액 추이

□ 연도별 추이

	2006년	2007년	증 감 륜
보고건수	5,011천건	3,729천건	△25.6%
보고금액	149조원	99조원	△33.6%

□ 월별 추이

	' 06.03월	' 06.12월	' 07.06월	' 07.12월
■ CTR 보고건수(천건)	639	382	295	203
■ CTR 보고금액(조원)	21.9	10.5	7.5	5.3

(3) 통화규모별 보고 현황

구 분	5천만원 미만*	5천만 ~ 1억 미만	1억 ~ 5억 미만	5억 ~ 50억 미만	50억원 이상	합 계
건수(천건) (%)	7,184 (82.3)	1,018 (11.7)	496 (5.7)	34 (0.4)	2 (-)	8,734 (100)
금액(조원) (%)	48 (19.8)	65 (26.7)	77 (31.7)	35 (14.4)	18 (7.4)	243 (100)

\* 1영업일 거래의 합산액이 5천만원 이상

## 다. 기 타

## (1) 전략적 심사분석에 의한 정보제공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혐의거래 등록 건수	0	131	42	71	123	91	458
제공 건수	0	9	9	14	11	17	60

## (2) 법집행기관 및 외국 FIU로부터의 정보제공요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국내기관 요구 건수	1	8	15	11	77	86	198
외국FIU 요구 건수	3	31	30	42	33	18	157

## 3) 주요 외환거래자료 수집현황

(단위 : 건)

구 분	당발송금	타발송금	외국통화 매매	외화수표 매매	외화출금
2002년*	1,365,098	484,503	60,605	29,607	2,612
2003년	1,362,284	607,065	66,392	27,560	3,054
2004년	1,397,067	618,953	69,137	27,446	4,189
2005년	1,482,251	700,377	75,016	26,296	1,595
2006년	1,619,954	803,852	93,893	26,567	3,463
2007년	2,066,379	925,319	108,554	26,107	-
합 계	9,293,033	4,140,069	473,597	163,583	14,913

\* 2002년 건수에는 2001년 12월의 건수가 포함됨

## (4) 지급수단수출입자료 수집현황

(단위 : 건)

구 분	반입 신고	반출 신고	합 계
2002*	50,266	4,140	54,406
2003	40,920	4,222	45,142
2004	39,952	3,347	43,299
2005	40,276	3,100	43,376
2006	41,851	3,023	44,874
2007	41,069	3,333	44,402
합 계	254,334	21,165	275,499

\* 2002년 건수에는 2001년 12월의 건수가 포함됨

## 2. 금융정보분석원 주요 연혁

### 2000년도

- 2000.02.20 재정경제부에 FIU 구축 기획단 설치('00.4.10, 국무총리 훈령)
- 2000.05.14~17 '제8차 Egmont Group 총회'에 옵저버로 참석(파나마)
- 2000.05.31~6.02 '제3차 APG 연차총회' 참석(시드니)
- 2000.06.23 제1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 2000.07.27 제2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 2000.08.18 FIU 도입방안에 관한 제2차 공청회 개최(대외경제연구원 주관)
- 2000.11.21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 2000.11.23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 국회 제출

### 2001년도

- 2001.02.27 동 법안에 대한 법사위 상정·심의
- 2001.03.02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법사위 공청회 개최
- 2001.05.22~24 '제4차 APG 연차총회' 참석(쿠알라룸푸르)
- 2001.06.13~15 '제9차 Egmont Group 총회'에 옵저버로 참석(헤이그)
- 2001.09.3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 국회의결
- 2001.09.27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 공포
- 2001.11.2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대통령령)공포
- 2001.11.28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 2001.11.30 신동규 제1대 원장 취임
- 2001.12.13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정·시행

## 2002년도

- 2002.01.15 '법집행기관 협의회' 개최
- 2002.01.17 자금세탁방지제도 시·도 설명회 개최(1.17~23일)
- 2002.01.26 영문 홍보물 제작 및 FIU관련 법령 영문번역
- 2002.02.02 자금세탁관련 「해외동향」발간 개시(월 2회)
- 2002.02.18 홈페이지 개편(영문 사이트 신설 등)
- 2002.03.04 태국에 대한 상호평가 참석(3.4일~3.7일)
- 2002.03.11 벨기에와 MOU(양해각서) 체결
- 2002.04.01 '자금세탁방지제도 종합편람' 발간배포
- 2002.04.13 IMF/WB FSAP 평가단 방문(4.13일, 4.18일)
- 2002.06.05 Egmont Group 가입(모나코에서 개최된 제10차 총회)
- 2002.06.07 APG공동의장 수임(제5차 APG총회)
- 2002.07.09 20개 국내은행에 협의거래보고 프로그램 배포
- 2002.08.12 김규복 제2대원장 취임
- 2002.08.16 자금세탁관련 법령집 발간
- 2002.08.26 APG 상호평가단 방문(8.26일~8.29일)
- 2002.09.03 제3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 2002.10.07 영국(NCIS)과 MOU 체결
- 2002.10.14 폴란드(GIFI)와 MOU 체결
- 2002.10.16 IMF/WB FSAP 평가단 방문(10.16일~17일)
- 2002.11.25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1주년 기념 행사
- 2002.11.25 제4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 2002.11.28 'FIU정보시스템' 가동
- 2002.11.29 42개 증권사에 협의거래보고 프로그램 배포

- 2002.12.05 자금세탁방지 홍보 팜플렛·스티커 금융회사 배포  
 2002.12.26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사례 및 대응방안(연구용역)’  
 후속자료집 발간·배포

## 2003년도

- 2003.01.28 ‘법집행기관 협의회’ 개최  
 2003.01.28 ‘금융 연수기관 연수담당자 간담회’ 개최  
 2003.02.05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임원 간담회 개최(2.5~2.21일)  
 2003.02.09 FATF총회 및 Working Group 회의 참석(2.9~14일, 프랑스  
 파리) FATF 40개 권고사항, NCCT, 테러자금 차단방안 등 논의  
 2003.02.10 브라질과 MOU 체결  
 2003.02.28 국내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자금세탁방지 홍보 팜플렛(영문) 배포  
 2003.03.27 APEC 대체송금 Working Group 회의 참석(3.27~30일, 싱가포르)  
 2003.04.07 체신관서(우체국) 간담회 개최(서울·충청지역, 4.7, 4.14일)  
 2003.04.10 김병기 제3대원장 취임  
 2003.04.23 손해보험사 보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2003.04.30 제1회 자금세탁방지 정책협의회 개최  
 2003.05.21 제5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2003.05.28 자금세탁방지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특강  
 호주와의 MOU 체결  
 환전업자 간담회 개최  
 2003.06.18~20 FATF총회 및 Working Group회의 참석(독일 베를린)  
 FATF 40개 권고사항 개정안 확정  
 2003.07.21~25 Egmont 총회 및 Working Group 회의 참석 (호주 시드니)  
 2003.09. 3 볼리비아 FIU와의 MOU 체결

- 2003.09.15~19 제6차 APG 연차총회 (마카오) 참석
- 2003.09.29~10.3 FATF 총회 및 Working Group 회의 참석 (스웨덴)
- 2003.10. 6 루마니아 FIU와의 MOU 체결
- 2003.10.15 부행장간담회 개최, 「FATF 개정권고사항」 확정에 따른 제도 개선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2003.10.20 인도네시아 FIU와의 MOU 체결
- 2003.11. 7 콜롬비아 FIU와의 MOU 체결
- 2003.11. 9 베네수엘라 FIU와의 MOU 체결
- 2003.11.21 제6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3. 11.26 자금세탁방지 정책협의회 개최,
- 2003.11.27 금융정보분석원 설립2주년 워크숍 개최
- 2003.12.18 일본 FIU와의 MOU 체결

**2004년도**

- 2004.01.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협의거래보고 기준금액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
- 2004.01.30 핀란드와 MOU 체결
- 2004.02.12 외은지점 보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 2004.02.19 증권사 보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 2004.02.25~27 FATF 총회(프랑스, 파리) 참석
- 2004.03.05 생명·손해보험사 보고책임자 간담회 개최
- 2004.03.11 감사수탁기관 검사담당 부서장 간담회 개최
- 2004.03.17 방영민 4대 원장 취임
- 2004.03.29~30 에그몽그룹 Working Group 회의(덴마크, 코펜하겐) 참석
- 2004.04.16~05.27 농·수협 지방순회설명회 개최

2004.05.28	변양호 5대 원장 취임
2004.06.03	국내은행 보고실무자 간담회 개최
2004.06.14~18	제7차 APG 연차총회 개최(서울 롯데호텔)
2004.06.16	필리핀 및 태국과 MOU 체결
2004.06.21~25	제12차 에그몽그룹 총회(영국, 건지) 참석
2004.06.23	캐나다 및 아일랜드와 MOU 체결
2004.06.30~07.02	FATF 총회(프랑스, 파리) 참석
2004.07.27	APEC 반테러 대책반 회의(싱가폴) 참석
2004.08.30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개편 가동
2004.08.31	협의를거레보고 의무 위반 기관 과태료 부과
2004.09.07	과테말라와 MOU 체결
2004.09.24	APEC 반테러 대책반 회의(칠레, 샌디에고) 참석
2004.10.05~06	APG 유형론 워크샵(브루나이) 참석
2004.10.25~26	에그몽그룹 Working Group 회의(태국, 방콕) 참석
2004.10.25	프랑스와의 MOU 체결
2004.10.29	포르투갈과의 MOU 체결
2004.11.03	테러방지관련 설명회 개최
2004.11.11	스페인과의 MOU 체결
2004.11.23	미국과의 MOU 체결
2004.11.24	특정금융거래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 협의거래 On-line 보고 근거기준 마련 및 보고서식 개정
2004.11.30	FIU정보시스템 제2단계사업('04.4.1~11.30일) 완료 - 2004.12.1일부터 협의거래 On-line 보고 시행
2004.12.13	2004.4/4분기 법집행기관 협의회 개최
2004.12.06~08	FATF 유형론 워크샵(러시아, 모스크바) 참석

- 2004.12.07 제8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4.12.23 혐의거래보고 의무 위반 기관 과태료 부과(외환은행)
- 2004.12.2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국회의결
- 2004.12.31 알바니아와의 MOU체결

**2005년도**

- 2005.01.17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공포  
(고객현금거래보고 및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
- 2005.01.31~2.13 APG 네팔 상호평가 프로그램 참가
- 2005.02.01 김석동 제6대 원장 취임
- 2005.03.09 APG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전화회담
- 2005.04.03~05 Egmont WG 출장(네덜란드령 안틸레스)
- 2005.04.05 파라과이와의 MOU 체결(네덜란드령 안틸레스)
- 2005.04.08 제9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5.04.25~05.13 중국 FIU(CAMLMAC) 직원 KoFIU 방문 연수(한국의 AML  
제도 및 심사분석과정 교육 등 연수프로그램 제공)
- 2005.05.25 제10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5.05.24~05.27 정부혁신박람회 FIU정보시스템 출품(KOEX)
- 2005.05.25~05.29 제2차 APEC 정책협의회 참석(태국 방콕)
- 2005.05.25~12.20 FIU정보시스템 3단계 사업 구축
- 2005.06.01 APG Steering Group 전화회담 실시
- 2005.06.06~08 FATF 총회(FATF-APG Joint Session) 참석 및 홍콩 FIU 방문
- 2005.06.10 FATF 이행로드맵 작성

- 2005.06.14 유재한 제7대 원장 취임
- 2005.06.26~07.03 제13차 Egmont 총회 참가(미국 워싱턴)
- 2005.06.29 러시아와의 MOU 체결(미국 워싱턴)
- 2005.06.30 칠레, 바하마와의 MOU 체결(미국 워싱턴)
- 2005.07.08~16 제8차 APG 연차총회 참가(호주 케언즈)
- 2005.07.21 2004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 2005.08.24 8.24 제11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5.09.07~08 중국 FIU원장단 KoFIU 방문
- 2005.09.23 우크라이나와의 MOU 체결(우크라이나)
- 2005.09.23 몰도바와의 MOU 체결(몰도바)
- 2005.09.27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2005.10.09~14 FATF 총회 참가(프랑스 파리)
- 2005.10.23~28 10.23-28 APG Typologies WG 참가(피지)
- 2005.11.15 중국과의 MOU 체결(북경)
- 2005.11.26~31 FATF 2005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유형론 WG참가 (브라질)
- 2005.11.29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

#### 2006년도

- 2006.01.12 2004년도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영문판 발간배포
- 2006.02.13~17 FATF WG 총회 참가(남아공 케이프타운)
- 2006.02.27~03.2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대테러대책반회의 참가(베트남 하노이)
- 2006.03.10~17 Egmont 체제전환 및 실무회의 참가(이집트 카이로)
- 2006.03.14~17 네덜란드 재무부 주최, 테러자금조달관련 장관급회의 참가(네덜란드)
- 2006.04.06 홍콩과의 MOU 체결
- 2006.04.19 제12차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6.04.24~26 방글라데시 FIU 직원(3명) KoFIU 방문(한국의 AML제도 소개)
- 2006.06.05~10 제14차 Egmont 총회 참가(사이프러스)
  - 2008년도 Egmont 총회(16차)의 한국유치 확정
- 2006.06.09 테러자금조달억제법 제정안 등 입법예고
- 2006.08.08 FATF 옹저버국가 지위 획득
- 2006.09.27 2005년도 영문 연차보고서 발간
- 2006.09.28 제13차 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6.10.08~16 제18차 FATF 총회 참가(캐나다 밴쿠버)
- 2006.10.11 덴마크 FIU와 정보교환 MOU 체결
- 2006.10.25 권태균 8대 원장 취임
- 2006.11.06~10 Egmont 실무회의 참가(폴란드 바르샤바)
- 2006.11.14~17 APG유형론 워크샵 및 특별총회 참가(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2006.11.10 KoFIU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인텔리전스 대상 수상
- 2006.11.28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5주년 평가 및 기념행사
- 2006.11.28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시스템 브랜드네이밍 발표(GOOD FINDER)
- 2006.11.29 대만 FIU와 정보교환 MOU 체결
- 2006.12.03~14 몽골 국별 상호평가(APG 주관) 참가
- 2006.12.26 FIU자금세탁방지 포탈시스템 오픈

**2007년도**

- 2007.02.19~02.23 제18기 제2차 FATF총회 참가, 제1차 Contact Group면담(프랑스)
- 2007.03.14 이철환 9대 원장 취임
- 2007.03.16 1/4분기 범집행기관 협의회 개최
- 2007.03.28 특정금융거래 보고기관 협의회 개최
- 2007.04.13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 2007.04.30 말레이시아 FIU와 정보교환 MOU 체결
- 2007.05.28~06.01 제15차 Egmont 총회 참가(버뮤다 해밀턴)
- 2007.06.25~6.30 제18기 제3차 FATF총회 참가, 제2차 Contact Group면담  
(프랑스 파리)
- 2007.07.23~07.27 APG 총회 참가
- 2007.08.08 제14차 자금세탁방지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07.09.07 3/4분기 법집행기관 협의회 개최
- 2007.10.08~10.12 제19기 제1차 FATF총회 참가, 제3차 Contact Group면담  
(프랑스 파리)
- 2007.10.10 FIU정보시스템 제3차 정부혁신 BP대회 수상
- 2007.10.11 FIU정보시스템 「대한민국 e비즈니스 대상」 수상
- 2007.10.15 2006년도 연차보고서 발간·배포
- 2007.10.29~11.12 인도네시아 상호평가 참가
- 2007.11.02 레바논 FIU와 정보교환 MOU 체결
- 2007.11.2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7.11.28 자금세탁방지의 날 선포식 및 기념행사
- 2007.12.17 사이프러스 FIU와 정보교환 MOU 체결
- 2007.12.18 4/4분기 법집행기관 협의회 개최
- 2007.12.2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공포
- 2007.12.26 금융정보분석원 정책백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선진화」 발간
- 2007.12.27 FIU 정보시스템 「한국소프트웨어 공모전」 장려상(기관 표창) 수상
- 2007.12.28 FIU 정보시스템 5단계 구축완료 및 완료보고회 개최
- 2007.12.31 2006년도 영문 연차보고서 발간

### 3.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1.9.27 법률 제6516호  
개정 2005.1.17 법률 제7366호  
개정 2007.12.21 법률 제8704호  
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5.1.17, 2007.8.3, 2007.12.21, 2008.2.29>

1.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아.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자. 삭제 <2007.8.3>
  - 차. 삭제 <2007.8.3>
  -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파. 삭제 <2007.8.3>
  - 하.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 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금융기관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불법거래 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협박자금

4. "자금세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행위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05.1.17, 2007.12.21, 2008.2.29>

1. 제4조·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2.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21>

③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건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개정 2007.12.21>) ① 금융기관등은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

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도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③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3.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받은 사항이 그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금융기관등(금융기관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제4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①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1. 다른 금융기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과의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제5조 (금융기관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금융기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기관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5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 의무 <개정 2007.12.21>)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제6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련된 자료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2008.2.29>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보고한 정보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07.12.21>

③삭제 <2005.1.17>

④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2008.2.29>

⑤검찰총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⑥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제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③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목적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11조 (금융기관등의 감독·검사)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제4조의2·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② 금융기관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제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제1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17>

1.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17, 2007.12.21>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지시·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05.1.17>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2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704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제2호다목·제3호다목·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제5호·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 제1항제1호·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

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②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1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2007.12.21>

1. "특정범죄"라 함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외에서 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의하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

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4. "범죄수익등"이라 함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이들 재산외의 재산이 혼합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

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조·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조의2 (국외범) 제3조 및 제4조의 죄는 「형법」 제3조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7.29]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외의 재산과 혼합된 경우에 그 몰수대상 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혼합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몰수대상재산(당해 혼합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호의 재산의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지상권·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죄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 (추징)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제11조 (국제공조의 실시)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당해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행하는 동종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9조 내지 제63조·제64조제2항 및 제65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칙 <제6517호,2001.9.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 부칙(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7196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제1항제3호"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 (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②내지 ④생략

##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t;제7428호,2005.3.31&gt;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4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lt;제7625호,2005.7.29&gt;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몰수·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식품위생법」 제74조의2[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3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④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3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71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한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② 생략

[별 표] <개정 2007.8.3>

중대범죄(제2조제1호관련)

1. 형법중 다음 각목의 죄

- 가. 제2편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제1항의 죄
- 나.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 다. 제2편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중 제207조·제208조·제212조(제207조 및 제20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13조의 죄
- 라. 제2편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죄·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의 죄
- 마.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제228조제1항·제229조(제228조제2항을 제외한다)·제231조 내지 제234조 및 제235조[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제228조제1항·제229조(제228조제2항을 제외한다)·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 바. 제2편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중 제246조제2항 및 제247조의 죄

- 사.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254조(제2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55조(제250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의 죄
- 아.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 및 제315조의 죄
- 자.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3조 내지 제324조의5·제325조 및 제326조의 죄
- 차.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제333조 내지 제340조·제342조(제331조의2·제332조 및 제341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343조의 죄
- 카.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 타.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동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파.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의 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동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 하. 제2편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2조의 죄
2. 경륜·경정법 제23조·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의 죄

3. 관세법 제269조 및 제271조제2항(제26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4.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9호의 죄
5.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6.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의 죄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의 죄
8. 상법 제622조 및 제624조(제622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9. 상표법 제93조의 죄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1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의 죄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2항제3호 및 제5항의 죄
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제19조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제22조 및 제23조(제18조·제19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죄
15.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6. 삭제 <2007.8.3>
17. 직업안정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호의 죄
1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의 죄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5조 및 제7조의 죄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5조·제5조의2·제5조의4·제6조·제8조(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를 환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조의 죄

21.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제5조제1항 및 제6조 [제2조·제3조·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제340조제2항 후단 및 제343조의 죄를 제외한다) 및 제5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23.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58조 및 제60조의 죄
24. 「식품위생법」 제74조의2[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분을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3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의 죄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시행일 2008.12.22,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운항중(「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 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원자료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금융거래"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제3조 (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제4조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무부장관

2. 외교통상부장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때에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은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
2. 제3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제5조 (금융기관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기관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공중협박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
2.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 또는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한 자
2.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한 자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⑥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하는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7조 (과태료)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등(그 중사자가 과실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869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  
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재정경  
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60> 부터 <85> 까지 생략

## 에그몽 그룹 회원 강령

(Egmont Group of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Charter)

### □ 전문(Preamble)

FIU 원장 회의에서 에그몽 그룹 회원으로 인정받은 FIU(금융정보 분석기구)는 다음의 노력을 기울인다.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국제적인 성격을 이해한다.
- 국제 기준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를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에서 FIU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인식한다.
- 1995년 6월 9일 첫 번째 국제 회합에서 전 세계 FIU의 비공식 포럼으로 에그몽 그룹을 설립한다는 FIU 원장 회의 참가자가 내린 결정을 이해한다.
- 에그몽 그룹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FIU로 구성되며 FIU 사이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폭 넓은 운영상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 FIU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분야에서 에그몽 그룹의 중요한 역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조직 구성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에그몽 그룹의 목적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발전시켜왔던 조직 구성 및 내부 절차 합의에 대해 재확인한다.
- 수 년 동안 에그몽 그룹에서 구체화되고 회원국들이 승인한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원칙은 운영규약(Statement of Purpose),

에그몽 FIU 정의 주석서(Interpretative Notes Concerning the Egmont Definition of 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정보교환 원칙(Principles of Information Exchange) 등에 나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음을 이루고자 한다.

-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 교환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FIU의 노력을 결집시킨다.
- 효과적인 FIU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각각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각각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본 회원 강령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한다.
- 국내법의 틀 내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에그몽 그룹에 참여하며, 원칙에 따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행동 강령 및 다음의 조항을 준수한다.

## I. 정 의

### I-1. FIU(금융정보분석기구)

"FIU(금융정보분석기구)"란 국가 중앙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금융 정보를 수집(허락이 있을 경우 요청) 및 분석하여 소관당국에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 (i) 혐의가 있는 범죄 수익과 관련된 정보 및 테러자금조달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
- (ii)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국가 법령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

## I - 2. 합 의

“합의”라 함은 모든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반대 의견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했다는 일반적인 합의를 말한다.

## II. 에그몽 그룹의 목적

에그몽 그룹의 목표는 전 세계 FIU를 위한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국내 프로그램 실시를 촉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정보 상호 교류를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체계화한다.
- FIU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직원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FIU의 효과성을 증대시킨다.
- 에그몽 그룹 보안 웹(ESW: Egmont Secure Web)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FIU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의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 회원국 FIU 운영부서 간의 조율 및 지원을 확대한다.
- FIU 운영의 독립성을 증대시킨다.
- AML/CFT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회원 국가 또는 프로그램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회원 국가에서의 FIU 설립을 촉진한다.

### Ⅲ. 회원 자격

#### Ⅲ-1. 회원 자격

에그몽 그룹 회원은 FIU 원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된 FIU (금융정보분석기구)로 구성된다.

모든 에그몽 그룹 회원들은 다음의 기본 사항을 준수한다.

- 에그몽 그룹의 FIU 정의를 충족시킨다.
- 현재 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 정보교환 원칙에 따라 다른 FIU와 정보를 교환할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럴만한 법적 능력을 갖춘다.

또한 본 회원 강령의 조항 작성에 동의한다.

에그몽 그룹 회원은 실무그룹, 트레이닝 세미나,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수준의 에그몽 그룹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회원은 에그몽 그룹 보안 웹(ESW: Egmont Secure Web)에 액세스하여 사용할 자격이 주어진다.

#### Ⅲ-2. 에그몽 그룹 원칙

- a) 모든 회원은 상호주의 또는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정보교환 원칙에 명시된 기본 규칙에 따라 다른 에그몽 그룹 FIU와 최

대한의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 FIU 차원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한다.
- 정보를 제공하는 FIU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목적으로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정보 비밀을 보호한다.

b) 모든 에그몽 그룹 회원은 “V. 재원조달”에서 명시한 재원조달 원칙(funding formula) 및 조항에 의거하여 에그몽 그룹 예산에 기여한다.

#### IV. 조직 구조

에그몽 그룹의 운영 조직은 FIU 원장 회의, 에그몽 위원회, 실무 그룹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 IV-1. FIU 원장 회의

a) 개요

FIU 원장 회의는 에그몽 그룹의 집행 이사회(governing body)다.

FIU 원장 회의는 최소 연 1회 총회를 개최하며, 총회에는 각 FIU의 원장 또는 대표가 참석한다.

FIU 원장 회의의 결정은 합의에 따른다.

b) FIU 원장 회의의 권한

FIU 원장 회의는 에그몽 그룹 회원, 조직 구조, 예산 및 원칙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이를 승인한다.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현재의 회원 강령 및 부속서를 개정한다.
- 새로운 회원 가입을 승인한다.
- 실무그룹의 구성 및 해체를 승인한다.
- 사무국의 권한을 승인한다.
-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 재원조달 원칙(funding formula), 예산 및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 연간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 연차 보고서를 승인한다.

#### IV-2. 에그몽 위원회

##### a) 역할 및 기능

에그몽 위원회는 FIU 원장 회의 및 실무그룹을 위한 자문 및 조율 기구의 역할을 한다.

에그몽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에그몽 그룹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FIU 원장 회의에 조언을 제공한다.
- 각기 다른 실무그룹의 업무를 조율한다.
- 사무국의 업무를 감독한다.
- 국제 포럼에서 에그몽 그룹을 대표하거나 대표단을 파견한다.

##### b) 구성

에그몽 위원회는 상임 회원 및 지역 대표 회원으로 구성되며, 에그몽 위원회 내부 절차(Egmont Committee Internal Procedures)에서 명시한 조항에 의거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사무국장은 에그몽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 IV-3. 실무그룹

에그몽 그룹은 전문성 개발, 협력 및 공유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편성하고, 실무그룹의 활동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각각의 실무그룹은 내부 조직 및 운영 절차를 결정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FIU 원장 회의는 실무그룹 의장 선출을 승인한다.

실무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FIU 원장 회의에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 IV-4. 사무국

#### a) 개요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FIU 원장 회의에서 임명되며, 직접 또는 에그몽 위원회를 통해 FIU 원장 회의에 보고한다.

사무국은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다.

#### b) 역할 및 기능

에그몽 그룹 사무국은 FIU 원장 회의, 에그몽 위원회 및 실무그룹 의장의 지시에 따라 FIU 원장 회의, 에그몽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행정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 연간 예산을 편성한다.
- 에그몽 회원의 분담금 수납 및 회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한다.
- 국제 포럼에서 에그몽 그룹을 대표한다.
- FIU 회원 및 에그몽 그룹 회원 가입 후보에 대한 정보 관리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
- 에그몽 그룹의 논의를 위해 연구 조사, 입장 정립, 기타 문서 등을 준비한다.
- 에그몽 회의를 준비하는 주최국 FIU에 도움을 제공한다.
- 에그몽 회의를 위한 모든 지원 자료를 만들고 제공한다.
-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다.

## V. 재원 조달

### V-1. 에그몽 그룹 재원 조달

에그몽 그룹 활동에 위한 재원은 다음을 통해 조달한다.

- a) 회원의 연간 분담금
- b) 회원의 자발적인 추가 분담금
- c) 기타 출처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분담금

에그몽 그룹은 기금 관리의 책임을 진다.

## V-2. 회원 분담금

에그몽 그룹 회원의 분담금은 다음의 원칙에 기반한 재원조달 원칙(funding formula)에 따라 계산한다.

- 모든 회원은 분담금을 납부한다.
- 분담금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된다.
- 회원 분담금은 고정 분담금과 누진율 방식으로 계산한 추가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 누진율 방식에 따른 재원조달 원칙에서는 GDP 대 1인당 GDP의 비율을 75:25로 적용한다.

## VI. 현재의 회원 강령에서 명시한 조항 이행

에그몽 그룹은 높은 회원 기준을 유지하며 에그몽 그룹 기준 이행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적용한다.

- 에그몽 회원이 “III-1 회원 자격”에서 명시한 모든 회원 기본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 “III-2 에그몽 그룹 원칙”에서 언급한 정보 교환에 있어서 기밀을 유지하지 못 하거나 다른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
- “V. 재원 조달”에서 명시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회원 강령은 2007년 5월 31일 버뮤다의 해밀턴에서 열린 에그몽 그룹 FIU 원장 회의에서 승인됨

##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저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 금융 조항의 이행을 위한 FATF 지침

### 1. 도입

#### □ 목 적

1. 본 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각국이 대량 살상 무기(WMD) 확산 방지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안- 현재로서는 S/RES/1718 (2006), S/RES/1737 (2006), S/RES/1747 (2007)- 에 포함된 지정 대상자 별 금융 규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도울 목적을 지닌다.
  - (b) 각국이 WMD 확산 방지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안 - 현재 S/RES/1695 (2006), S/RES/1737 (2006)- 에 포함된 행위 별 금융 규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도울 목적을 지닌다.
  - (c) S/RES/1540 (2004)와 S/RES/1673 (2006) 하에서 WMD 확산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목적을 지닌다.
2. 본 지침은 이 분야에서의 기존의 지침을 침해하지 않으며 자금, 기타 자산, WMD 확산 품목 혹은 기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미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조치 혹은 의무 사항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3. 본 지침은 구속력이 없으며 FATF 40+9 권고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FATF 상호 평가 혹은 평가 과정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 배경: 관련 UN안보리 결의안**

4. 1항에서 언급된 UN 안보리 결의안은 특히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UN 회원국들에 대한 특정 의무 사항 측면과 다르다.

- (a) 요구되는 금융 조치의 성격 (예를 들어 지정 대상자별 금융 규제 혹은 행위별 금융 규제)
- (b) 금융 조치의 대상과 이러한 대상을 식별하는 기관
- (c) 금융 조치의 이행시 금융회사를 포함한 국민들과 각 국의 책임 사항

**S/RES/1695 (2006)**

5. S/RES/1695 (2006)의 4항에 의거하여 각 국은 국내 관례와 법률, 국제법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품목, 물자, 상품, 기술의 획득과 북한의 미사일 혹은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 자원의 이전을 경계하고 방지해야 한다.

6. 이런 측면에서 각 국은 S/RES/1718 (2006)에 나와 있듯이 경계 태세를 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의 북한으로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공급, 판매, 혹은 이전과 관련된 모든 금융 이전을 방지할 권한과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RES/1718 (2006)**

7. S/RES/1718 (2006)의 8(a)(i)와 (ii)항은 북한의 미사일 혹은 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 상품 혹은 기술의 공급,

판매, 이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8. S/RES/1718 (2006)의 8 (c)항은 금지된 상품과 기술의 제공, 제조, 보존 혹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훈련, 조언, 서비스, 원조의 제공을 금지한다.

9. S/RES/1718 (2006) 의 8 (d) 항에 의거하여 각 국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1718 위원회나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WMD, 탄도탄 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했다고 지정한 개인 또는 단체, 혹은 이들을 대항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르는 개인 혹은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신들의 영토 내의 자금, 금융 자산,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시켜야 하며 동결된 자금, 금융 자산, 경제적 자원을 이들의 이득을 위해서 자국 영토 내의 자국민이나 개인 혹은 단체가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0. 1718 위원회와 UN안보리는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지정하고 허가 받지 않은 자금, 기타 자산, 경제적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지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S/RES/1718 (2006)에 따라 모든 UN 회원국들은 자산 동결 조치를 이행할 권한과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1718 위원회나 UN 안보리에서 지정한 개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항하는 자나 이들의 지시에 따르는 자들이 동결된 자금, 기타 자산,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S/RES/1737 (2006)**

11. S/RES/1737 (2006) 의 6 항에 의거하여 각 국은 이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훈련, 금융 지원, 투자, 중개 행위 또는 다른 서비스 행위의 제공과 더불어 금지된 품목, 물자, 장비, 상품과 기술의 공급,

판매, 이전, 제조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자원이나 서비스의 이전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S/RES/1737 (2006) 의 12 항에 의거하여 각 국은 S/RES/1737 (2006)의 별첨 문서 상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 1737 위원회에서 이란의 핵 확산 활동 혹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지원을 제공했다고 명시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을 대행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르는 자,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신들의 영역 내의 자금, 기타 자산, 경제적자원을 동결해야 하며 이들이 속한 국가의 국민들이나 그 영토 내에 있는 개인 혹은 단체가 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위해 자금, 금융 자산, 혹은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3. S/RES/1737 (2006) 의 6 항과 관련하여 각 국은 11항에서 언급된 금지 대상의 기술 혹은 금융 지원이나 서비스를 이란에 제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과 능을 보유해야 한다.

14. S/RES/1737 (2006) 의 12 항과 관련하여 1737 위원회와 UN 안보리는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기업을 지정하고 허가 받지 않은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을 이용할 수 없는 자를 지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S/RES/1737 (2006)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은 이러한 자산 동결 조치를 이행할 권한과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명시된 개인과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행하는 자나 이들의 지시에 따르는 자, 또는 지정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단체들이 어떤 자금, 기타 자산, 경제적 자원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S/RES/1747 (2007)**

15. S/RES/1747 (2007) 의 4 항에 의거하여 각 국은 자산 동결 조치와 S/RES/1737 (2006) 12항의 경제, 금융 금지 조치를 S/RES/1747 (2007)의 별첨 I 에 명시된 개인과 단체들로 확대할 의무가 있다.

**□ 정 의**

16. 본 FATF 지침의 목적에 대해 다음의 정의들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목적이 명확성을 띠게 된다.

(a) ‘동결’이라는 용어는 동결 메커니즘 하에서 주관 기관 또는 법원이 개시한 조치에 기반하여 조치가 유효한 기간 동안 자금이나 그 밖의 다른 자산의 이전, 전환, 처분이나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결된 자금 또는 자산은 동결 당시에 이들 자금이나 자산에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들) 또는 단체(들)의 자산으로 남으며 동결 메커니즘 하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러한 개인 혹은 단체가 명시한 금융회사나 기타 중개 기관이 자금 또는 자산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

(b)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이라는 용어는 은행 신용장, 여행자 수표, 은행 수표, 송금 수표, 주식, 증권, 채권, 환어음, 또는 신용장과 이런 자금 혹은 기타 자산에 의해 발생되거나 붙는 모든 이자, 배당금 또는 기타 수입 혹은 가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하며 유형 혹은 무형, 동산 혹은 부동산, 취득 방법에 상관 없이 모든 종류의 자산과 금융 자산, 이러한 자금 혹은 기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전자 혹은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적 서류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c) 지정된 개인과 단체라는 용어는 다음에 의해 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지칭한다.

(i) S/RES/1718 (2006)의 경우에 1718 위원회 또는 UN 안보리, 또는

(ii) S/RES/1737 (2006), S/RES/1747 (2007) 혹은 그 이후의 관련 결의안의 경우에 1737 위원회 또는 UN 안보리. 여기에는 S/RES/1737 (2006), S/RES/1747 (2007)의 별첨에 나열된 개인들과 단체들이 포함

(d) 행위 별 금융 금지 조치라는 용어는 S/RES/1737 (2006)에 따라 국가들이 금지해야 하는 다음의 활동 또는 국가들이 S/RES/1695 (2006)에 따라 고려 중일 수 있는 금지 활동을 지칭한다.

(i) S/RES/1695 (2006): S/RES/1695 (2006)의 4항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혹은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금융 자원의 이전

(ii) S/RES/1737 (2006): S/RES/1737 (2006)의 제 6항에 따라 이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훈련, 금융 지원, 투자, 중개, 기타 서비스 등의 지원과 S/RES/1737 (2006)의 3항과 4항에서 명시된 금지 품목, 물자, 장비, 상품과기술의 공급, 판매, 이전, 제조 혹은 사용과 관련된 금융 자원 또는 서비스의 이전

## II. 지정 대상자 별 금융 규제

### □ WMD 확산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식별과 지정

17. 관련 UN안보리의 예방적인 목적에 순응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관련 협의 활동을 확인할 위치에 있고 UN 회원국들이 관련 UN위원회에 추가적으로 개인과 단체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8. 각국은 적절한 권한과 절차를 보유해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 혹은 기반에 따라 다음의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인과 단체를 식별하기 위해 관련 출처를 통한 정보를 구하고 이를 고려하며 이들의 신원 확인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기 위해 주관 기관을 설립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 S/RES/1718 (2006): 다음의 행위를 하는 모든 개인 혹은 단체

(i) 불법적인 수단의 이용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기타 WMD, 탄도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개입되어 있는 자

(ii) 불법적인 수단의 이용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기타 WMD, 탄도탄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

(iii) 본 하위 조항의 (i) 혹은 (ii) 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 혹은 단체를 대행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르는 자

(iv) 본 하위 조항의 (i) 혹은 (ii) 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자

b) S/RES/1737 (2006): 다음의 행위를 하는 모든 개인 혹은 단체

(i) 이란의 핵확산 활동 혹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에 개입한 자

(ii) 이란의 핵확산 활동 혹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

(iii) 본 하위 조항의 (i)항과 (ii)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 혹은 단체를 대행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르는 자

(iv) 불법적인 수단의 이용을 포함하여 본 하위 조항의 (i) 혹은 (ii)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자

19. UN 회원국들은 또한 법적 기틀 내에서 적절한 법적 권한과 절차를 보유해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는 주관 기관을 확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 1718 위원회나 UN 안보리에 18 (a)항에서 기술된 S/RES/1718 (2006)의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인과 단체들의 지정을 제안한다.

(b) 1737 위원회나 UN 안보리에 18 (b)항에서 기술된 S/RES/1737 (2006)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인과 단체들의 지정을 제안한다.

20. 지정 시에는 지정된 개인 혹은 단체와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 혹은 단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원확인 정보를 최대한 많이 보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UN 측에 대상자를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하는 국가들은 규제 조치가 적절한 대상자에게 취해질 수 있도록 지정 대상이 되는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과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동결

메커니즘에 따라 지정된 개인 혹은 단체와 똑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받는 개인 혹은 단체들을 위해 각국은 명단에 포함된 개인 혹은 단체가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정자의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의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공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 지정된 개인과 단체의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의 거래 동결과 금지

21. 관련 UN 안보리의 예방적인 목적에 순응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이들의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을 지체 없이 동결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과 절차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을 보유한 개인 혹은 단체들은 법이나 규제에 의해 동결 조치를 따를 것이 요구된다.

22. 관련 UN 안보리의 예방적인 목적에 순응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UN 안보리에 결의안에 따라 허가되거나 승인되거나 혹은 통지 받지 않는 한 지정된 개인 혹은 단체를 위해서 영토 내에서 국민들, 개인들 혹은 단체들이 어떤 자금 혹은 기타 자산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3. 21항과 22항에서 설명한 조치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각국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하는 주관 기관(들)을 확인해야 한다.

- a) 지정된 개인과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며 대상이 선정되는 즉시 이들의 이름을 금융 분야와 리스크가 높은 다른 산업들에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의 확보

- b) 지정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이나 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 부문과 금융회사, 개인 혹은 단체가 동결 조치 준수라는 의무 사항을 이행할 시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분명한 지침 제공
- c) 수사와 더불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부과되는 민사, 행정, 형사상 규제 조치를 포함하여 21항과 22항에서 언급된 조치의 준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시행함.

24. 금융 규제 조치가 적용될 은행 혹은 기타 금융회사가 지정된 경우 각국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일련의 추가적인 조치와 예방책을 시행해야 한다.

- (i) 규제 조치가 효과적이며 확고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ii) 금지 대상이 되는 자금의 지급을 방지한다.
- (iii) 무고한 제 3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 (iv) 법적인 기틀 내에서 관계 당국과 국제적으로 협조한다.

**□ 동결 후의 보고와 수사**

25. 각 국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지정된 개인과 단체의 자금 혹은 기타 자산 동결 시 민간 부문에서 얻은 정보를 관련 당국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a) 적절한 수준의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의 동결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에서 수집한 정보를 주관 기관이 접수하고 공유하며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틀 내에서 절차를 개발한다.

- (b) 적절한 수준에서 금융회사에 최소한의 일반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이들 기관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동결 자금 혹은 자산의 보고와 관련된 금융 정보가 WMD 확산 자금 조달의 방지 조치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 □ 지정 해제, 동결 해제와 동결 자금 혹은 자산에 대한 접근 허용

26. 각 국은 국제적인 의무 사항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특정 기준의 충족에 바탕을 두고 지정 해제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공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S/RES/1718(2006) 에 따라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의 경우 이들의 지정 해제 절차는 1718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침 혹은 절차들을 따라야 한다. S/RES/1737(2006) 혹은 S/RES/1747(2007) 에 따라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의 경우, 해제 절차는 1737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침 혹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혹은 단체가 본 지침의 18항에 나타난 것처럼 S/RES/1718 (2006) 과 S/RES/1737 (2006)의 지정 기준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정 해제가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UN에 의해 지정 해제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해 각 국가가 지정 해제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7. 각 국가는 지정 해제된 개인과 단체의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의 동결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28. 각 국가는 다른 상황 하에서는 S/RES/1718(2006), S/RES/1737(2006) 하의 의무 사항에 따라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이 기본적인 지출 (특정한 요금, 비용, 서비스 요금 지불)이나 특별한 용도의 지출, 혹은 관련 당사자를 지정한 날 이전에 발생한 의무 사항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S/RES/1718

(2006)과 S/RES/1737(2006) 에서 각각 정한 절차에 따라 이들 자금 혹은 기타 자산에 대한 접근을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려면 UN의 회원국이 관련 UN 위원회에 이러한 자금 혹은 자산에 대한 접근을 승인하겠다는 의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관련 UN 위원회가 부정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기본적인 혹은 특별한 지출을 위해 동결된 자금 혹은 자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

29. 지정된 금융회사가 소유하거나 보유한 자금 혹은 기타 자산이 28항의 규정에 포함할 경우 각 국은 오직 허가된 대금 지급만이 이루어지도록 일련의 추가적인 조치와 보호책을 시행해야 한다. 본 지침에 대한 별첨은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와 보호책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30. 각 국은 동결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인 혹은 단체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관 기관 혹은 법원이 동결 조치를 재검토하도록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 Ⅲ. 행위 별 금융 규제

31. 각 국은 S/RES/1737 (2006)의 6항에 포함된 행위 별 금융 규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의무 사항의 예방적 목적에 순응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각 국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에게 해당되는 지침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 (a) S/RES/1737 (2006) 의 6항에 포함된 행위 별 금융 규제 조치에 금융회사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큰 고객, 금융 상품과 서비스, 거래의 식별

- (b) 보다 면밀한 주의, 조사, 감시를 통해 이러한 위험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통제 체제의 개발

이러한 지침의 개발 시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이행 단계에서 지침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2. FATF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31항에서 언급된 지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개발하며 공유하기 위해 각 국과 협력할 것이다.

- (a) S/RES/1737 (2006)의 6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지원 혹은 훈련, 금융 지원과 투자, 중개, 혹은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의의 개발
- (b) 고객 (예를 들어 수입업체, 수출업체, 중개 기관)을 대행하거나 거래 (예를 들어 신용장, 온라인 송금, 계좌 개설 등)에 사용되는 금융 상품 혹은 서비스의 타입을 고려할 때에 금융회사가 수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타입 식별
- (c) 행위 별 금융 규제 조치와 관련 있는 정보의 수집이나 이의 추가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의 확정
- (d) 금융회사들이 핵확산 자금 조달의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추가적인 정보 (예를 들어 특히 기밀과 수출 통제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는지 식별
- (e) WMD 확산 자금 조달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행위들의 목록을 개발하고 유형론 작업에 참여

FATF는 각국이 S/RES/1737 (2006) 6항 하의 행위 별 금융 규제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화롭고 효율적이며 실행 가능한 접근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방안들이 실행 가능하며 적절하며 효율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IV. S/RES/1540 (2004) 하에서 WMD 확산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에 대한 추가 연구**

33. S/RES/1540 (2004)의 의무 조항 VII 의 2 (6)과 3 (d) 7항 내에 있는 금융 조항은 FATF의 추가적인 검토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

34. S/RES/1673 (2006)은 S/RES/1540 (2004)의 요구 사항을 반복하고 있으며 각국이 WMD 확산 자금 조달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5. FATF는 UN 1540 위원회와 협조하여 다음 사항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할 것이다:

- (a) 현재 진행중인 WMD 확산 자금조달 위협 식별
- (b) WMD 확산 자금 조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조치의 효율성 분석
- (c) S/RES/1540 (2004)과 같이 기존의 UN 안보리의 기틀 내에서 WMD 확산 자금 조달의 방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예를 들어 유죄 조치, 보다 포괄적인 규제, 행위 별 금융 규제 혹은 통제 혹은 금융 정보 사용의 검토 등)의 식별

- 자금세탁방지업무 연차보고서의 내용중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우)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Tel : 02-2150-8017 Fax : 02-3418-0623

[www.kofiu.go.kr](http://www.kofiu.go.kr)

- 동 연차보고서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http://www.kofiu.go.kr)) → 홍보자료실 → 발간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

---

인 쇄 일 2008년 6월 일

발 행 일 2008년 6월 일

편집·발행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편집·기획 : 우 리 기 획(02-502-0014)  
인 쇄

---

---